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장애인 차별 예방



이 교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장애인 차별 예방>의 학습내용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저작권은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원고 집필자인 김성연(장애인차별 금지추진연대) 저자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예방> 사이버인권교육을 수강할 때 보조교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humanrights.go.kr>

목차



제1강 차이·차별 이야기	1
1. 차이·차별의 개념	4
2. 차이·차별의 상황들	5
3. 공유하기	7
문제풀기	9
정리하기	11
제2강 장애인 차별 이야기	13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16
2.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17
3. 공유하기	21
문제풀기	22
정리하기	24
제3강 발달·지적·정신장애인을 만나다	25
1. 발달·지적·정신장애의 개념	28
2. 발달·지적·정신장애 차별사례	32
3. 공유하기	34
문제풀기	35
정리하기	37
제4강 지체·뇌병변장애인을 만나다	39
1. 지체·뇌병변장애의 개념	42

2. 지체·뇌병변장애 차별 사례	44
3. 공유하기	48
문제풀기	49
정리하기	51

제5강 시각·청각장애인을 만나다 53

1. 시각·청각장애의 개념	56
2.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58
3. 시각·청각장애인 차별사례	59
4. 공유하기	64
문제풀기	65
정리하기	67

제6강 법으로 담아낸 장애인 차별과 인권 69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념	72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	73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과 구성	77
4.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담지 못한 이야기	82
5. 공유하기	84
문제풀기	85
정리하기	87

제7강 차별의 판단 및 정당한 편의 제공 89

1.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 차별	92
2.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94
3. 공유하기	99
문제풀기	100
정리하기	102

제8강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105
1.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란?	108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들	110
3. 공유하기	113
문제풀기	114
정리하기	116
제9강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차별 이야기	119
1.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122
2.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124
3. 공유하기	130
문제풀기	131
정리하기	133
제10강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차별	135
1.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138
2.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139
3. 공유하기	146
문제풀기	147
정리하기	149
제11강 장애를 이유로 하는 괴롭힘들	151
1. 장애인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	154
2.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상황들	156
3. 공유하기	160
문제풀기	161
정리하기	163

제12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내외 장애인 관련법 살펴보기	165
1.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168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69
3. 공유하기	173
문제풀기	174
정리하기	176
제13강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79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82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법	186
3. 공유하기	189
문제풀기	190
정리하기	192
제14강 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193
1.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 및 제도	196
2.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한 상황들	199
3. 공유하기	205
문제풀기	206
정리하기	208
제15강 장애인 차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11
1. 장애인 차별이란?	214
2. 우리 사회 속 장애인의 모습	215
3.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16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자세	218
5. 공유하기	219
문제풀기	220
정리하기	222

제1강

차이·차별 이야기



1. 차이·차별의 개념
2. 차이·차별의 상황들
3. 공유하기

차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외형이 매우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작고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에게 존재하는 차이들이 모여 사회 속에서 우리를 각각 의미 있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즉, 외모, 성격, 나이, 성적 취향, 학력, 직장, 소득수준, 출산, 가족형태, 결혼, 종교, 국적, 피부색, 장애 등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촘촘한 차이들을 통해 사회는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은 무엇일까요? 차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즉, 장애, 나이, 학력, 성적 취향을 이유로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고, 누군가에게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차시에서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 및 다름이 차별이 되는 상황을 알아보고, 누구도 다름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차이와 차별, 편견, 선입견 등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차이가 차별이 되는 잘못된 인식과 사회환경에 대해 분석 할 수 있다.
- 차이가 차별이 되는 소수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차이·차별의 개념과 연결
- 차이 차별의 상황들

가. 차이와 차별의 정의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말하며,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한다.

나. 선입견(선입관)과 편견의 정의

선입견 또는 선입관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하며,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서, 선입견과 차이가 있다.

다. 평등권 침해의 정의

차이, 차별, 선입견, 편견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차이·차별의 상황들

가. 우리는 모두 다르다


사람은 키, 몸무게, 점수, 성별, 피부색, 장애유무, 재산정도, 나이, 가족구성원, 성적취향, 성정체성 등 수 많은 차이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통해 나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이는 다름을 통해 결국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누군가 나를 또는 내가 누군가를 차별했을 때

차별도 역시 나의 경험이 차별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통해 차별을 찾아낼 수 있는 나의 감수성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의 차별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 사례

1.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을까?

 사례 1

어린 시절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딸이었던 나의 삶은 차별의 연속이었다. 집안일은 모두 나 혼자만 도와야 했고, 항상 남자형제들의 뒤치다꺼리에 비뻤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형제들 가운데 가장 공부를 잘했지만, 꼭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담임선생님의 권유는 '계집애를 무슨 대학에 보내냐'는 할머니의 노발대발로 마무리되었다.

예전에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서 딸이라는 이유로 가정 내에서 차별이 많았다. 특히 사례의 주인공처럼 집안일이나 진학문제에서 거의 딸이 많이 희생을 했다.

2.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에게 차별이 됐을까?



사례 2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이력서를 꼼꼼히 보고 실력을 가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면접관들이 그 여성분에게만 질문도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여성분에게 특별한 판단 없이 좋은 점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공장이 많이 있는데 공장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동네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뺏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외국인노동자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 이전보다 더 외국인노동자를 경계하게 되었고, 일부 집주인은 세를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범인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동네사람들 누구도 괜한 오해를 받은 그분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례 2)처럼 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말 또는 행동을 한 경험은 없는가?

3. 차이와 차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례 3

오늘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께서 시험점수 60점 이하는 보충 수업을 해야 하니까 모두 남으라고 하시고, 60점 넘는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시고요, 이것 차별 아닌가요?

교사가 서로 다른 점수 차이에 대하여 60점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은 남아서 보충 수업을 받도록 하고 한쪽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며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하게 차별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 사례와 관련하여 성적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성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 '성적이 나쁜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아도 괜 다'라고 하면서 성적에 의한 차별은 마땅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4. 나의 차별 감수성은 몇 점일까?

사례 4

신원동력.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생명력과 기업의 원동력이 이루어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효에는 유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녀가 유행했을 당시에, 립스틱이 유행하는 지금도 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잠은 집에서 주무셔야죠! Are you homeless?

첫 번째 신원동력에 관한 광고와 두 번째 효에 관한 광고는 모두 성적 차별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신원동력 광고에서 벡타이는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원동력의 주체가 남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두 번째 효 광고에서 립스틱과 비녀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마치 여성이 효가 부족한 것처럼 암시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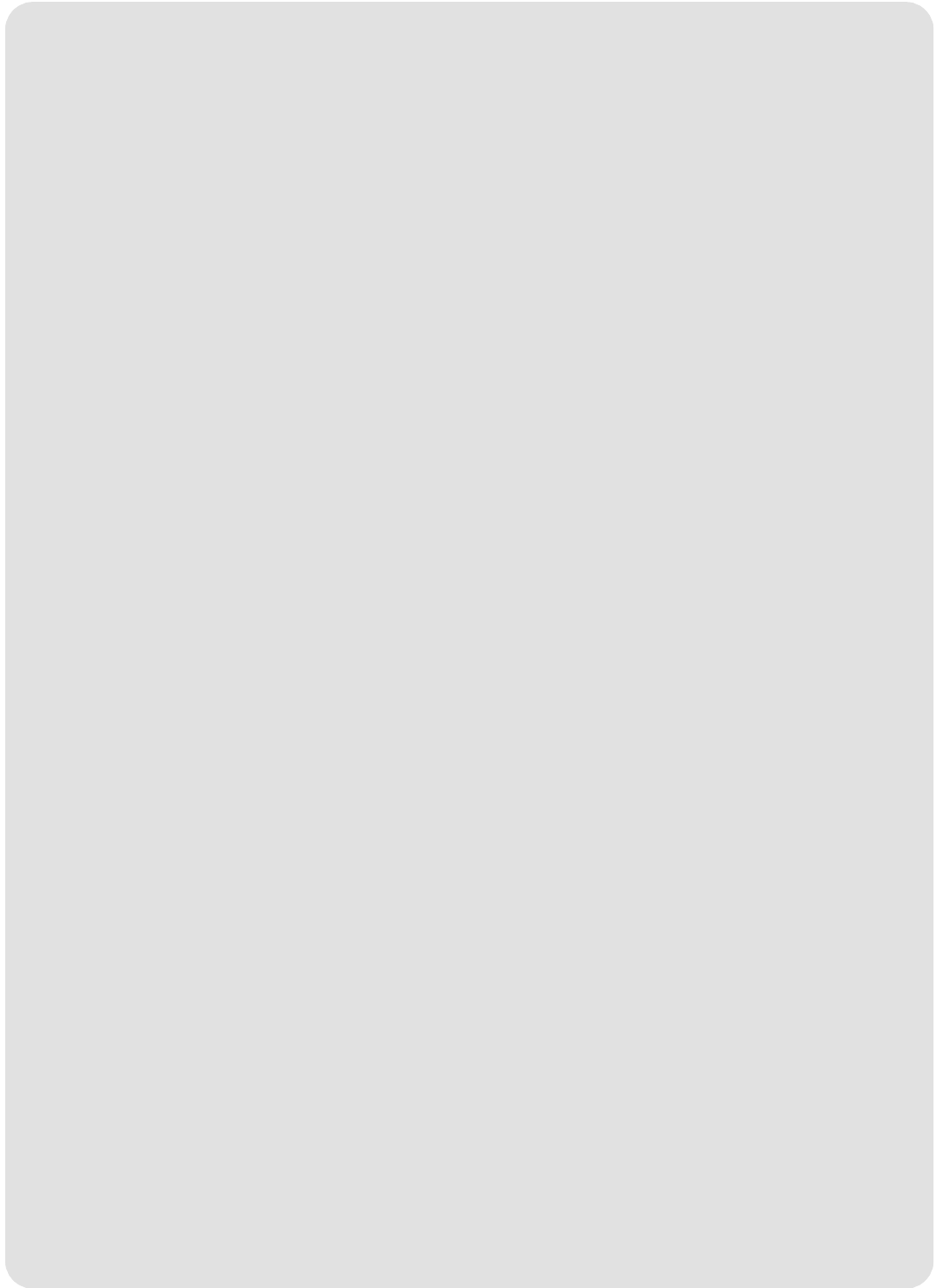
세 번째 광고에서는 노숙인을 너무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사람이 모두 노숙인이라는 듯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3 공유하기

다음의 사례를 읽어보고 차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보세요.

1955년 미국 몽고메리시의 '흑백인종분리법'은 매우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버스에서 흑인들은 항상 뒷자리에 앉거나 서 있어야했으며, 묘지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으며, 술집, 가게 모든 공간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에게 대항하는 흑인을 죽이거나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흑인들은 버스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항하는 '버스타지 않기'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버스를 타지 않으면서 사회전반에 흑인차별에 대해 알리고 결국 '흑백인종분리법'을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풀기

1. 다음 중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둘 이상의 대상을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 ②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 ③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른 집단을 배제시키는 형태
- ④ 누구나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따라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정답 | ②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 해설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는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2. 다음 중 평등하지 **않은** 상황은 무엇인가요?

- ① 팔이 긴 오빠와 팔이 짧은 내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은 나한테 가까운 쪽에 놓는다.
- ② 뇌병변 장애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친구에게 시험시간을 더 길게준다.
- ③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을 다르게 해준다.
- ④ 여우와 두루미가 모두 참여한 파티에서 음식은 접시에 담는다.

○ 정답 | ④ 여우와 두루미가 모두 참여한 파티에서 음식은 접시에 담는다.

○ 해설 | 여우와 두루미가 모두 함께 있다면, 음식은 접시와 호리병에 각각 담아야 한다. 평등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 주는 것이다.

3. 다음 중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아이의 문제는 엄마의 육아태도에서 발생한다.
- ②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 ③ 여성도 담배를 피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 ④ 성소수자는 성생활이 매우 문란한 사람이다.

- 정답 | ③ 여성도 담배를 피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 해설 | 여성만 담배를 피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 담배를 피는 대상자를 남성으로만 한정해서 광고나 전단지를 만든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리하기

1. 차이·차별의 개념과 연결

① 우리는 모두 차이를 갖고 있음

- 우리는 모두 다름
-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 남과 구별되는 나를 확인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음.

② 차별이란?

- 어떤 차이를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느 누구도 어떤 작은 차이로도 차별 받아서 안 된다는 것.

2. 차이·차별의 상황들

- 사회 속의 나는 언제든지 사회 속의 차별의 대상자일수도 가해자 일수도 있음
 - 여성차별, 인종차별, 빈부차별, 학력차별, 외모차별 등 우리는 사회 속에서 갖가지 차별과 만나게 됨
 - 누구나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우리는 누구도 어떤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함

제2강



장애인 차별 이야기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3. 공유하기

제2강

장애인 차별 이야기

차별은 차이를 다름으로 보지 않고 무엇인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장애인은 명백하게 비장애인과 다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그 차이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차이를 갖고 있고, 내가 아닌 타인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든 어색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서로에게 맞는 방식들을 찾아가는 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왜 유독 장애라는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불편함을 느끼며 다르게 대우하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 사회는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사회환경이 어떠한 차이로도 사람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만들어져서 누구나 다 그 기준에 맞출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강요되는 폭력적인 사회환경보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고용도, 교육도, 서비스도 함께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장애라는 차이를 비장애인과 서로 바라보고 이해할 기회와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장애인 차별의 개념
-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가. 장애의 개념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나.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목적).

다.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정의에서는 장애인 차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차별이다.

2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가. 장애인은 모두 구걸하는 사람이다?

사례 1

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삼성동 코엑스라는 대형 쇼핑공간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친구랑 밥도 함께 먹고 쇼핑도 함께하려고 활동보조인에게 부탁해 휠체어도 반짝 반짝하게 닦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코엑스에 도착했다. 친구랑 오붓한 시간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보내고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하면서 천 원짜리 한 장을 내 점퍼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언어장애로 뭐라 대답하기도 힘들고 몸 움직임이 돈을 뿌리치기도 힘들어서 결국 그냥 돈을 받았다.

차가 막혀서 좀 늦게 도착한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사람이 불쌍한 눈으로 날 보면서 내 주머니에 천 원짜리를 넣어주었고, 본의 아니게 부수입을 얻게 되었다. 내 동생은 장애로 걷는 것이 약간 불편하고, 언어장애로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 그래도 휠체어를 타는 것은 아니라 비교적 외출은 편한 편이어서 자주 함께 외식을 한다.

그날도 맛 집을 일부러 검색해서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잠깐 차를 세우느라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 동생이 출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가보았더니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이 '지금 손님이 많아서 안돼요. 뭐 파실건데요. 나중에 오세요'하면서 동생을 잡상인이나 구걸하러 온 사람 취급하며 들여보내지 않고 있었다. 너무 화가 나서 '장애인은 다 잡상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인가요? 우린 손님이에요, 손님!!'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 그래서야 종업원이 사과를 했는데 동생 마음은 어땠을지...

많은 장애인 당사자는 위의 사례 1)과 같은 상황을 자주 경험한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 매우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모습은 그 다양한 삶의 모습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간혀있는 장애인의 모습만을 보려고 한다. 장애인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

나.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



사례 2

3년 전쯤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동국씨는 거의 눕는 자세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1급 장애인입니다.

얼마 전 활동보조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동국씨를 향했고 늘 경험하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동국씨 옆으로 다가와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요즘 안락사도 있고 한데 이런 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텐데...'하시면서 옆에 계시던 활동보조인 분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장애가 유전되면 애는 무슨 죄냐’고 말하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낱아서 잘 킴을 수는 있겠느냐는 막말도 대놓고 하더군요. (낙태를) 은근히 중용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체장애 4급인 김모(36)씨는 지난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 며칠간 잠을 설쳤다고 했다. 축복과 걱려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걱정 섞인 편견이었다. 그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가족들이 아이 양육의 짐을 떠안을까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많이 실망했죠”라고 털어놨다.

출산 장려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임신·출산·양육권 등 장애 여성의 모성권이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도 낙태를 경험한 장애 여성 가운데 절반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주변 권유에 의해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잘못된 법과 사회 인식이 임신한 장애 여성들을 옥죄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경험한 장애여성의 48.5%가 주변의 권유로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주위에서 낙태를 권하는 경우가 67.0%였고, 정신장애는 65.4%, 지체장애는 47.3%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부가 장애인이거나,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출산이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전반적으로 제지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애는 개별적인 손상의 문제이기 보다, 그러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느냐가 문제이다. 장애 자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인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그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다. 배려일까요, 동정일까요?

사례 3

전방 시각장애자인 지혜 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왔다가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느낌이 드는 식당은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친절하고 메뉴판을 읽어주거나 음식의 위치를 잘 알려주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식사를 끝낸 후에 지혜씨가 계산대에 있는데, 계산을 위해 카드를 건네는 지혜씨에게 식당주인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좋은 일도 하고, 한끼 대접해드린다고 생각할 테니 그냥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는 내가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동정하고 시혜하는 마음 때문에 비장애인을 대할 때와 다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차별이다.

라. 어느 장애인의 죽음의 의미

사례 4

고 김순석씨는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열여덟 살에 서울 강동구 거여동의 조그만 금은세공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남다른 손재주로 9년 만에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부인 김동심 씨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경남 씨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980년 10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두 다리에 철심을 박는 중상을 입고,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83년 10월 수동휠체어를 타고 퇴원하여 강동구 마천동 월세방 옆에 조그만 금은세공 작업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대문시장에 자신이 만든 액세서리를 납품하며 재기를 위해 몸부림쳤지만, 당시 곳곳에 막아서던 도로의 턱들과 사람대접을 하지 않는 당시 사회적인 시선 등에 의해 좌절하고, 결국 서른다섯 살의 나이로 부인과 다섯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1984년 9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마천 2동 지하셋방 한구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검은색 볼펜으로 편지지 5장을 뽁뽁하게 채워 남긴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 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만 눈에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고 마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보게 해주었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놓았습니다. 시장님, 을지로의 보도블록은 턱을 없애고 경사지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 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장애자들은 사람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대우를 받아도 끝내는 이용당합니다. 조그마한 꿈이라도 이뤄보려고 애써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저를 약해지게만 만듭니다.”

고 김순석씨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차별문제를 죽음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그는 쉽게 지나치는 턱과 계단, 그리고 횡단보도가 누군가에는 삶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 큰 사건임을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 개념보충: 배려

- 배려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 타인에 대한 존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
-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를 서로를 바라보는 것
-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결국 장애인을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 누군가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고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는 동정이나 시혜와는 명백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

3 공유하기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②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③ 장애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④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서 장애인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정답 | ③ 장애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해설 | 광고에 장애인이 등장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나 광고효과로 인정되는 행위를 차별로 본다.

2. 다음 비장애인이 하는 행동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너무 불쌍해보여서 돈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어드렸다.
- ② 식당에서 옆자리에 식사하시는 중증장애인 분의 식사 값을 나오면서 대신 지불했다.
- ③ 목발을 짚고 짐을 들고 가는 장애인이 보여서 무조건 뛰어가서 짐을 들어드렸다.
- ④ 지하철에서 흰 지팡이를 짚은 시각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 정답 | ④ 지하철에서 흰 지팡이를 짚은 시각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 해설 | ④의 경우 동정이 아닌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있는 것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 좀 더 서있는 것이 편한 비장애인인 내가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③의 경우 '무조건'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편견이 담겨있는 행위이다.

3.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도로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다.
- ② 장애인에게 꼭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 ③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니 항상 특별대우를 해준다.
- ④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정답 | ③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니 항상 특별대우를 해준다.

○ 해설 | 장애인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차별이다.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기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① 장애차별의 시작은 편견과 선입견이다

- ‘장애인은 모두 구걸하는 사람이다, 장애가 있는 저런 몸을 가지고 살아서 뭐해,’
- 사회 속에 우리는 모두 매우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
- 다양한 삶의 모습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음
-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간혀있는 장애인의 모습만을 보려고 하므로, 차별이 시작됨

②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손상보다 사회적 제약의 문제이다.

- 장애는 개별적인 손상의 문제이기 보다 그러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느냐가 문제
- 장애 자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인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그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

③ 동정은 배려가 아닌 장애인 차별

- 동정은 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서 너무 불쌍하다’라는 마음에서 시작
- 진정한 배려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예: 서있기 힘든 사람에게 서 있기 편한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
-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는 내가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동정하고 시혜하는 마음 때문에 비장애인을 대할 때와 다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함.
- 장애를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

제3강



발달·지적·정신장애인을 만나다

1. 발달·지적·정신장애의 개념
2. 발달·지적·정신장애 차별사례
3. 공유하기

제3강

발달·지적·정신장애인을 만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을 총 1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적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인지의 어려움, 관계 맺기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각종 인권침해, 비하, 차별 등의 상황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장애유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그 특성상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호하기 어려우며,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당사자인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황이나 심증으로는 가해자가 특정됨에도 정확한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 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장애인당사자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건이 비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만 설명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피해 정도가 부풀려져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곤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유형 중 특히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사례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강

장애인을 발달·지적·만나다

학습목표

-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분류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발달장애, 정신장애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발달·지적·정신장애의 개념
- 발달·지적·정신장애 차별사례

가. 발달·지적·정신장애의 개념

1. 발달장애의 개념

발달장애는 발달기, 즉 아동기에 발생한 장애로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다시 말해 자기 나이에 맞는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개념보충: 발달장애의 국가별 정의

- **미국:** 18세 이전에 장애가 나타나서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며, 주요한 생활활동영역 7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갖는 사람
- **일본:** 18세 미만에 발생한 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그 외의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A), 그 외 유사한 뇌기능 장애로 정의
- **한국:** 지적 장애와 자폐성장애,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뇌병변장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2. 지적장애의 개념

지적 장애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이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다.

☞ 개념보충: 장애인 등급 기준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35미만: 1급 지적 장애인 ☞ 보호필요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50미만: 2급 지적 장애인 ☞ 단순 행동훈련 가능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50미만: 3급 지적 장애인 ☞ 사회적 직업적 재활 가능

3. 자폐성 장애의 개념

자폐성 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이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개념보충: 자폐증

- 정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해 능력에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발달 장애
- 유래: 영어로 'Autos'·그리스어로 자신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

4. 정신 장애의 개념

정신 장애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이나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정동장애는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를 뜻한다. 따라서 지적 장애는 인지, 자폐 성장장애는 관계 맺기, 정신 장애는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이다.

나. 장애의 연결

1. 발달·지적·정신장애의 분류와 증상

1) 발달·지적·정신장애의 분류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 장애유형별로 판정기준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등급별로 시행하고 있다.

2) 발달·지적·정신장애의 증상

(1) 발달장애

발달장애는 말 그대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사람은 출생부터 나이를 먹어가며 발달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또래의 같은 연령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발달이 지연되어 천천히 진행되며, 그런 과정에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생기는 장애이다. 따라서 지원과 훈련이 필요한 장애이다.

(2) 지적장애

지적 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성 지수를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측정해 장애의 정도가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이해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3) 자폐성 장애

자폐성장애는 1943년 라오카너라는 의사가 자폐증 병에 대해 명확히 분류한 증상으로 카너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해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자폐성 장애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서펀트 증후군이 대표적이다.

☞ 개념보충: 아스퍼거 증후군과 서펀트 증후군

○ 아스퍼거 증후군

- 또래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언어표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처럼 보임
- 장애특성상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어내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또래와 관계 맺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 학습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성 부족으로 실제 생활에서 타인의 오해를 받기 쉬움

○ 서펀트 증후군

-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장애는 아니지만, 자폐성장애인 가운데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함.
- 타인과의 관계 맺기, 눈맞춤, 의사소통 등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발달장애인을 대할 때 주의점

○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추상적 단어보다 구체적 단어로 가능한 짧은 문장 말하기

-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자료를 함께 이용
- 묻는 말에 계속 “예”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단답형이 아닌 선택형 질문하기
예) 관련한 그림 중에 선택하도록 하기
- 의사소통을 하려고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발달장애인의 감정상태를 살펴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으로 대하기

○ 발달장애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는 모두 이유가 있음



예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흔들며 위아래로 뛰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무 심하게 자해하는 행동

- 소리, 빛, 냄새 등 발달장애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변자극 살펴보기
 -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대하기
- 발달장애인을 나이에 맞게 대해 줘야 함
- 성인 발달장애인을 아이취급하거나 반말하지 않기
- 발달장애인의 행동은 속도가 다를 수 있음
- 충분히 시간주고 기다려주기

가. 우리동네에 발달장애인은 안된다.



사례 1

서울의 한 중학교 내에 설립하기로 한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부모 1: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 다네요 글썄

학부모 2: 어머, 우리 애들이 장애인들과 학교를 같이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되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주민들은 학교 앞, 인근 빌라에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바라보는 님비현상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쉴 곳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 1: 우리 학교 내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면서 어떻게 지역주민 동의 없이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학부모 2: 맞아요 길도 좁은데 장애인들하고 같이 걸어 다녀야 하잖아요 우리아이들이 사고라도 당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학부모 3: 우리 애들이 장애인들하고 시설까지 같이 써야 한다니 너무 위험하잖아요! 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동네에서는 절대 안돼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결국 장애인을 나의 지역 안에서 배제하고 거절하는 차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 개념보충: 님비현상

- 의미: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의미.

2. 발달장애인이 가해자? 알고 보니 피해자

사례 2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수씨는 자폐성장애 3급 장애인이다. 민수씨는 그날도 간식을 사먹기 위해 복지관 앞 편의점에 들렀다.

민수씨: 와 출출한데 잘됐다!~ 편의점에서 맛있는거 사먹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잠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람이 민수를 끌다시피 하면서 복지관으로 찾아와 민수씨가 자기를 때려서 이가 부러졌다며 합의금 5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 저기요! 이봐요! 저 사람이 날 때려서 이가 부러졌다고요! 이거 어찌실 거예요!

복지관 담당자는 민수씨가 평소 폭력적인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민수씨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지갑을 뺏어가고 소리를 질렀다고 무서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

복지관담당자: 이상한데? 민수씨는 참 누구를 공격할만한 성격이 아닌데? 민수씨?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요.

민수씨: 제 지갑을 뺏었어요...소리도 질렀어요... 무서워요.....무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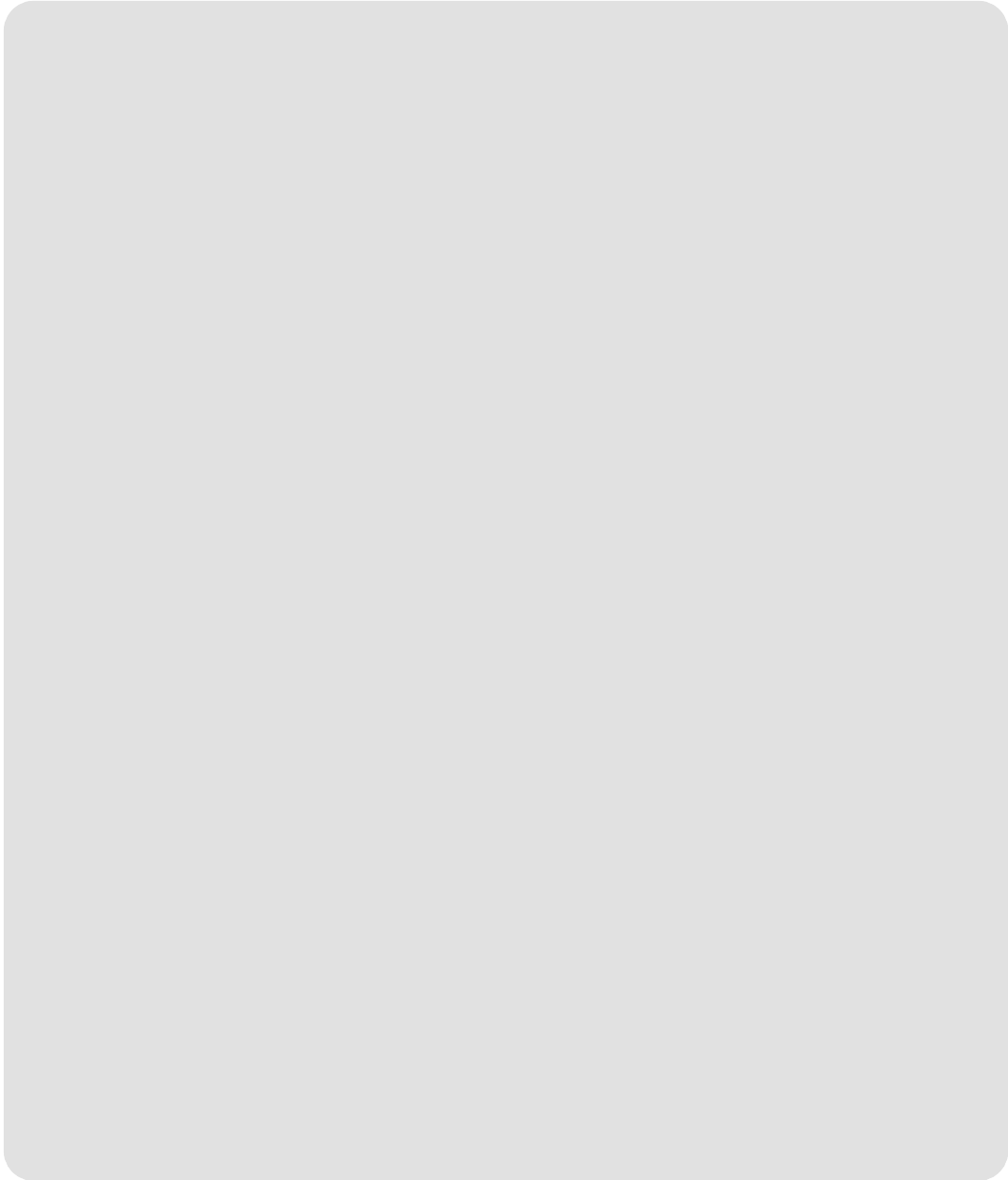
그리고, 겨우 편의점 주인을 설득해서 확인한 CCTV 내용을 보고 민수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CCTV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나가는 민수씨를 붙잡아두고 편의점 안에 두 손 들고 벌을 세우며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과 오히려 주먹다짐을 하면서 겁을 주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간혹 발달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용해 발달장애인에게 폭행, 폭언, 금품갈취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달장애인을 가해자로 몰아서 가족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3

공유하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장애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눈다.
- ② 발달장애는 장애특성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눈다.
- ③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 ④ 지적장애는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를 나눈다.

○ 정답 | ④ 지적장애는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를 나눈다.

○ 해설 |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지수(같은 연령대 비장애인과 비교 연령별 발달수준 측정)를 통해 장애정도를 나눈다.

2.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관계맺기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구체적인 단어로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 ②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한다.
- ③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경우 무조건 행동을 멈추도록 재제한다.
- ④ 성인 발달장애인을 아이 취급하거나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 정답 | ③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경우 무조건 행동을 멈추도록 재제한다.

○ 해설 |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경우 제재하면 더욱 더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불편한 요인을 파악하면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해야 한다.

3.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 ② 정신장애인이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쉼터
- ③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 ④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정답 | ④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해설 | 현재 언론매체와 경찰이 모든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정신병을 가진 사람의 범죄로 몰아가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리하기

1. 발달장애란?

- 발달장애는 말 그대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 사람이 태어나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며 진행되어야 할 발달이 어떤 이유로 또래의 같은 연령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발달이 지연되어 천천히 진행
- 그런 과정에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과 훈련이 필요

2. 장애특성에 따른 발달장애 유형

-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지수(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연령별 발달 수준을 측정)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나누어짐
- 일반적으로 이해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 자폐성장애는 1943년 리오카너라는 의사가 자폐증이라는 병에 대해 명확히 분류한 증상으로 카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해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3.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 구체적 단어사용, 짧은 문장 사용, 그림 등 시각자료 이용, 단답형이 아닌 선택형질문
-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관계만들기
-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소리, 빛, 냄새 등 주변자극을 살피면서 차분하게 대하기
- 아이취급을 하거나 반말하지 않습니다.

4. 발달·지적·정신장애 차별 사례

-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 거절
 - 우리 동네에 장애인관련 시설은 안 된다는 넘비현상으로 장애인 직업체험센터나 특수학교 등의 건립이 지역주민의 큰 반대에 부딪힘.
 -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장애인에 배제는 가장 심각한 차별 중 하나

제4강



지체·뇌병변장애인을 만나다

1. 지체·뇌병변장애의 개념
2. 지체·뇌병변장애 차별 사례
3. 공유하기

제4강

지체·뇌병변장애인을 만나다

지체·뇌병변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상 신체적장애 중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249만여명 가운데 지체장애인의 수는 129만여명,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25만여명으로 외부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가 전체장애인 수의 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수의 신체장애인이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환경은 외부신체기능상 어려움이 없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이동과 접근,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러한 신체적장애인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응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를 통해 원인이 되는 사회환경을 이해하고 대안을 설명할 수 있다.
- 이동권과 접근권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관련법규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지체·뇌병변장애의 개념
- 지체·뇌병변장애의 차별 사례

1

지체·뇌병변장애의 개념

가. 지체장애의 개념과 판정기준

1. 지체장애의 개념

지체장애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을 의미한다.

☞ 개념보충: 장애인 복지법의 지체장애 정의

-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둘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를 관절단위로 잃은 사람,
- ② 손가락을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관절단위로 잃은 사람,
- ③ 한 다리에 발등 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이나 기형이 있는 사람
- ⑦ 각 항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지체장애인 판정기준

지체장애인 판정기준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나. 뇌병변장애의 개념과 판정기준

1. 뇌병변장애의 개념

뇌병변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복합적이고 신체적인 장애를 의미한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에 기질적 병변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뇌병변장애인이라 정의하고 있다.

2. 뇌병변장애의 판정기준

뇌병변장애인 판정기준은 마비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앉기, 서기, 걷기 같은 이동능력, 일상생활의 동작을 하는 수행능력 등을 바탕으로 1~6급까지 판정 분류하고 있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이나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복장애로 판정하고 있다.

다.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접근권

1.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이동할 때 이동수단이나 절차, 경로 등에 대하여 제한이나 불편함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은 교통약자로서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의해 보호 받는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과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이 이동할 때 이동수단이나 절차, 경로 등에 대하여 제한이나 불편함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제4조에 의해 장애인접근권을 보호 받는다.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의 동등한 이용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가. 뇌병변장애 + 언어장애 = 차별 두 배



사례 1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민씨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외부 회의에 참석하느라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민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흠….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종민씨는 우연히 지하철 환승구간에서 주먹밥을 파는 가게를 발견하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종민씨: 마침 주먹밥 가게가 있어서 다행이야! 사무실 들어가서 주먹밥이라도 먹어야겠어.

환승구간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에 북적거렸고, 종민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종업원과 눈이 마주치자 원하는 주먹밥을 주문했습니다.

종민씨: 주먹밥 1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종업원은 한참이나 기다려도 주문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잠시 후에 종민씨는 다른 종업원에게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들끼리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업원: 뭐래? 뭐라는 거야? 이상한 사람인가 봐…저기 손님 뭐라고요?

종민씨: 주먹밥! 1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종업원: 그런 거 없어요!

잘 들리도록 또박또박 다시 한 번 이야기지만 종민씨를 무시하고 돌아선 것이죠.

뇌병변장애의 경우 뇌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장애와 함께 언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전혀 인지에는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력이나 인지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나. 나도 시험보고 싶어요.

사례 2

민수씨는 뇌병변1급 장애인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민수씨: 안녕하세요. 이번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뇌병변1급 장애인인데요 혹시 시험을 볼 때 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험시간연장과 답안지를 대필해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씨: 네? 회계학 시험은 계산이 많고, 계산과정까지 필요한데...대기업 시험 지원만큼 국가 시험에서도 누구나 공평하게 시험 볼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사기업보다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민수씨는 자신이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시험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 국가자격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로 정당한 편의가 이루어지는 시험은 변호사시험 정도밖에는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례 3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랜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누구나 친구를 만나면 하는 것처럼 함께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싶었지만, 만나자마자 우리는 거리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니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야 했고, 어찌 보면 내가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 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체, 뇌병변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장구 중 하나가 휠체어이다. 휠체어는 말 그대로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신체의 일부와 같은 보조장구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하면 휠체어를 떠올리고, 그러한 이유로 현재 장애인을 표시하는 표지판 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하면 휠체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에도 우리 주변에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식당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대한 적용은 받고 있지만, 두 가지 다 처벌조항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법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겠다.

라. 장애인에게 너무 위험한 길



사례 4

철수씨는 오늘도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인 철수씨는 매일 지나던 큰 도로 옆 인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휠체어 밑에 무엇이 탁 부딪히면서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수씨: 아...아니 이게 왜 안 움직이지?

철수씨가 다급히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나가던 사람들 여럿이 휠체어를 밀어주어서 바닥에 낀 것을 빼고 보니 제법 큰 돌이었습니다.

철수씨: 아니 인도 한복판에 이렇게 큰 돌이 어디서 나온 거지?

내레이터: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앞에 핸드폰 가게가 있고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 가게 앞 인도 위에 돌 여러 개로 탁자를 받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철수씨: 이 돌 이 가게 겁니까? 이렇게 인도 위에 큰 돌을 놔두면 위험하잖아요!!

그러자 가게주인은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철수씨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가게주인: 아래를 잘 보고 다니셨어야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휠체어 이동을 위한 도로와 인도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 위에 입간판을 세우거나 보행을 방해하는 구조물 또는 광고물품 등을 인도에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인도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마. 나도 고향에 가고 싶어요.

사례 5

홍진씨는 20년 넘게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홍진씨의 고향은 기차가 연결되지 않아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저상 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홍진씨: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 어릴 적 집...친척들...친구들... 만나고 싶다..

지난 2017년 7월 1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6부는 장애인5명이 제기한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버스회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고, 결국 예산지원이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이었다. 이후 버스회사가 실제로 저상 버스를 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다음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외에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적어보세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합니다. 이는 배리어 프리나 접근성 디자인, 보조과학기술로부터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레버식 문 손잡이 등을 설계하는 것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합니다. [출처] 위키백과



문제풀기

1.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체장애: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
- ②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
- ③ 지체장애: 손가락, 발가락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④ 뇌병변장애: 마비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의 수행능력 평가로 판정

- 정답 | ③ 지체장애: 손가락, 발가락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해설 | 손가락 일부, 두 발의 발가락 모두를 잃은 사람을 포함한다.

2. 다음 중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이동수단이나 절차, 경로 등에서 제한이나 불편함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이동권이다.
-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 ③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권리이다.
- ④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접근을 설명하는 권리이다.

- 정답 | ④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접근을 설명하는 권리이다.
- 해설 |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정보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까지를 포함한다.

3. 다음 중 뇌병변장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은 소통과 이동의 이중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 ② 모든 식당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 ③ 뇌병변장애의 경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 중복장애로 판정한다.
- ④ 많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 정답 | ② 모든 식당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 해설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식당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리하기

1. 지체·뇌병변장애의 개념

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차별

-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 이동수단이나 절차, 경로 등에 대하여 제한이나 불편함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동권
 - 동등하고 자유롭게 시설 설비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
 - 이동권과 접근권은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 교육이나 고용, 각종서비스 이용 등 다른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 제일 처음 우선되어야 할 권리

2. 지체·뇌병변장애의 차별 사례

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차별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뇌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장애와 함께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경우 인지에 어려움이 없는 뇌병변장애인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력이나 인지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음.

②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는 장소가 많음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심코 들어가는 식당들의 대부분은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0제곱미터 (약 100평)이상의 식당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은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

③ 고향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

- 현재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고속버스 중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전혀 없는 상황
- 기차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고향이 있는 장애인은 평생 고향 땅 부모님의 산소를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제5강



시각·청각장애인을 만나다

1. 시각·청각장애의 개념
2.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3. 시각·청각장애인 차별사례
4. 공유하기

제5강

시각·청각장애인을 만나다

사람의 신체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감각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겨 사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각각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감각에 이상이 있는 것을 감각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각각 인구 1000명당 6.3명 정도로 발생하며, 전체 인구 중 약 300만 명 정도로 시각 청각장애인을 모두 합치면 600만 명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90% 정도는 질환과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장애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시각자료를 통해 제공되거나,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정보가 시·청각장애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시각, 청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사례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한 장애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를 통해 사회적 환경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정보접근권과 이동권 등 시각,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종류 및 보장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시각·청각장애의 개념
-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시각·청각장애인 차별사례

가. 시각장애의 개념

1.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손상이나 시각 불능으로 인해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 분야에서 개인이 불리해 지는 것이다. 시력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개념보충: 시각과 시야

- 시야(시야각): 한 점을 주시할 때 그 점이 보이는 외계의 범위
- 시력: 물체를 볼 수 있는 명료도, 즉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

☞ 개념보충: 저시력

저시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상태로 의학적 광학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 시력장애를 의미한다. (교정시력 0.04~0.3)

2. 시각장애인의 정의

1) 법률적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① 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② 측정된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②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교육적 정의

- 저시력: 시각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생
- 맹: 시각 활용이 가능하지 않아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으로 학습하는 학생

나. 청각장애의 개념

1. 청각장애의 정의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나 소리를 듣고 뜻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 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청력에 손실을 가진 모든 장애를 포함한다. 청각장애는 농인과 난청인으로 구분된다.

2. 청각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청각장애인의 구분

- 농인: 청력이 일상생활의 수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 난청인: 주로 큰 소리로 말해야만 들리는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1. 정의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제공을 통해 자유롭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얻을 권리를 뜻한다.

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1항: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동법 제 4조 차별행위,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항: “장애인 관리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 시각장애인은 전혀 볼 수 없다?

- 시각장애인의 보이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모두 다름
- 대부분은 잔존시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맹장애인의 수는 많지 않음
- 맹의 경우만 보아도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 형태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감지할 수 있는 정도도 모두 다름
- 저시력장애인의 경우 시력과 시야결손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모두 다르다.

나. 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를 읽을 수 있다?

-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어려서부터 점자를 주요한 문자로 활용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시각장애인이나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를 훈련 받기는 하지만 익숙하게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움
- 컴퓨터를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노트북 등 컴퓨터 관련 기기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시각장애인이 모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자와 음성을 함께 제공해야 함

다. 청각장애인은 전혀 들을 수 없다?

-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들리는 정도가 개인에 따라 모두 다름
- 청각장애인의 경우 60% 이상의 사람이 보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 여부에 따라 각자 들리는 정도가 모두 다름
-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리나 진동을 감지하는 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됨

라.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사용한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님
-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구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음
- 구화는 다른 사람의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어린 시절부터 소리를 내는 훈련을 통해 음성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 청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화와 문자를 함께 제공해야 함

3 시각·청각장애인 차별사례

가.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는 말말말

사례 1

시각장애인인 선영씨는 요즘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씨: 어! 아이돌 체육대회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있잖아? 재미있겠는데?

내레이터: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는 출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자: 아 이런! 눈쁜 소경이네요. 지금 제대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직도 많은 시각장애에 대한 비하발언들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님’, ‘소경’,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같은 말이 있으며, 위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속담이나 관용어구 등을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서 아직도 종종 사용하여 당사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나. 목숨 걸고 타야 하는 지하철



사례 2

2014년 9월 20일 시각장애1급 26세 청년이 지하철 승차장에서 추락, 접근하는 전동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척추 신경을 다쳐 허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승차장은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방지할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스크린도어나 선형 유도블록 등의 안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 많은 지하철 역사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선형유도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철길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위의 사건으로 많은 장애인단체가 시설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고발생시 시설미비에 대한 책임보다 본인과실 비율을 높게 판단하는 관련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판단이다.

다. 버스에 개는 탈 수 없어요.



사례 3

얼마 전 맹인 안내견을 분양 받아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진수씨가 복지관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서있었습니다.

진수씨: 아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잠시 후 타려고 하는 버스가 도착해서 버스에 올라서려는데 기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버스기사: 아니? 개는 안돼요! 데이고 타려면 박스에 넣어서 타세요!

라. 시각장애와 은행이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례 4

회사에 소속되어 헬스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철수씨는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기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철수씨: 안녕하세요.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은행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직원: 혼자 오시면 안돼요. 보호자는 없으세요? 시각장애인분한테 인터넷뱅킹은 보이지도 않으신데 위험해서 안돼요.

철수씨: 뭐...뭐라고요? 그게 무슨...

마. 교수님 자료 좀 주세요.

 사례 5

진아씨는 사회복지학과 대학 신입생입니다.

진아씨: 나도 이제 드디어 대학생!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니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문서로만 주는 교수님 때문에 학습도우미의 도움 없이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아씨: 수업 중에 그림이나 화면도 제대로 설명해주시지 않는데... 자료까지 문서로만 주셔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요.



사례 6

맹학교에 다니고 있는 준형이는 맹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준형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몇 가지 직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준형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직업 외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현재 맹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여전히 안마사, 침사, 피아노조율사, 역술인, 사회복지사, 텔레마케터 등 한정된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안마사의 경우 졸업 이후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대부분의 학생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비장애인도 스포츠재활 등의 명칭으로 안마와 관련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이제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보조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직종개발과 그에 맞는 학교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사. 병어리 냉가슴?



사례 7

청각장애인 주희씨는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다가 한 기사의 제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엔 '병어리 냉가슴'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딸은 주희씨에게 물어왔습니다.

초등학생: 엄마 병어리 냉가슴이 뭐야?

주희씨: 어?? 병어리 냉가슴?? 그..그건 하소연 할 길이 없어 속만 썩는다는 뜻이야.

초등학생: 말을 못해서?

주희씨는 다른 표현도 많은데 굳이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못내 불쾌했습니다.

‘병어리’는 청각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과 방송 뉴스에서조차 병어리, 귀머거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에서처럼 병어리 냉가슴이란, 청각장애인을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 특히 사용하지 않아야 할 관용구로 꼽히고 있다.

아. 청각장애인은 관두세요.

사례 8

청각장애인인 유민씨는 한달 전 유기농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판매사원으로 취직해서 교육을 받고 매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유민씨: 드디어 나도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내레이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매장 관리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유민씨를 불렀습니다.

매장관리자: 청각장애인이라 손님들 응대도 어려운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불편해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만 두셔야 할 거 같아요.

유민씨는 청각장애6급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민씨: 얼마 전 보청기를 교체 받아서 적응하느라 뒤에 있는 손님과 멀리서 부르는 직원에게 응답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도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시각장애인이 길 한복판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두리번거리거나 청각장애인이 어딘가를 찾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시각장애는 시력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② 청각장애인은 청력이 일상생활의 수단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시각장애인은 빛도 명암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④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청각장애인이다.

○ 정답 | ③ 시각장애인은 빛도 명암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해설 |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잔존시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빛과 형태, 명암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가 모두 다르다.

2. 다음 중 시·청각장애인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 | | |
|------------------|-------------------|
| ①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설치 | ② 은행의 화상전화기 설치 |
| ③ 횡단보도 음성신호기 설치 | ④ 대형마트 입구에 안내원 배치 |

● ① ①②③④ ● ② ①③④ ● ③ ①② ● ④ ①②④

○ 정답 | ● ① ①②③④

○ 해설 | ④ 안내원 배치는 시청각 장애인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3. 시·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적절하지 **않은** 태도는 무엇인가요?

- ①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오른쪽 왼쪽 어느쪽에 설치 함께 의논한다.
- ② 청각장애인과는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 ③ 시각장애인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조용히 방에서 나간다.
- ④ 청각장애인에게 구화와 수화 중 무엇을 사용하는지 물어본다.

- 정답 | ③ 시각장애인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조용히 방에서 나간다.
- 해설 | 시각장애인은 방의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는 방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알려준다.



정리하기

1. 시·청각 장애의 개념

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에서의 차별

- 시,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장애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시각자료를 통해 제공되거나, 사람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정보가 시·청각장애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시각장애

- 시각손상이나 시각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 분야에서 개인이 불리하게 되는 것으로 전맹과 약시를 포함하여 저시력과 맹으로 구분

③ 청각장애

-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나 중추기관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청력에 손실을 가진 모든 장애를 포함하며 농인과 난청인 등으로 분류

2.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시각장애인이 모두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님
- 개인에 따라서 빛이나 형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가 모두 다름
- 시각장애인이 모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 등 기기에 따라서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청각장애인이더라도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님
-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소리나 진동을 감지하는 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

- 청각장애인이 모두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님
-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도 구화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음

3. 시각·청각장애인 차별 사례

-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시청각 장애인을 비하하는 속담이나 관용어구를 사용하면 안됨
(장님, 소경, 외눈박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병어리 냉가슴)
-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과 점자로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와 문자(시각자료)로 정보를 제공

제6강



법으로 담아낸 장애인 차별과 인권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과 구성
4.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담지 못한 이야기
5. 공유하기

제6강

법으로 담아낸 장애인 차별과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오랜 시간 너무나 관행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되어왔습니다. 고용, 교육, 이동, 의사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차별상황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도 차별을 가하는 가해자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갖지 못한 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은 장애를 숨기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감수하도록 장애인당사자를 억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활동으로 시작해 본격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운동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가면서 90년대 장애인복지법 개정 운동을 시작으로 장애, 차별이라는 문제가 조금씩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한해 장애인 인권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장애인 차별상담건수가 1천여 건이 넘어가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3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인권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법의 총칙 부분의 내용을 통해 법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과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 ‘장애’, ‘장애인’, ‘장애관련자’ 등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정의(제3조)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관련 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념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구성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10일 공포되어 2008년 4월11일 시행
- 한국 최초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인권법
- 본법 50조, 시행령 30조로 구성

☞ 개념보충: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2003년 4월 15일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5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연대체
-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로 연대체 명이 변경
- 23개 장애인단체의 연대체로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
-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 차별상담전화’를 개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

나. ‘장애’란?(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조)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다. 정당한 편의(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2항)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 제공받기 위한 편의

라. 복지시설(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조)

-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신고하지 않아도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곳

마. 건강권(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조 17항)

-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 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
- 비장애인과 같은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바. 괴롭힘(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조 20항)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행위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

오늘은 아침부터 온 식구가 분주합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는 소리와 맛있는 음식냄새가 가득 퍼지고, 다른 식구들은 청소와 집 안팎 정리로 온 집이 들썩거립니다.

성언씨: 엄마~! 뭐 도와 드릴 일 없어요?

엄마: 지금은 바쁘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방해되니까 알겠지?

성언씨: 아빠~뭐 도와드릴까요?

아빠: 곧 손님들이 오실 거니까 넌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있거라. 알겠지?

아마 오후에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하면 방안에서 없는 것처럼 꼭꼭 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손님 오는 날 성언씨는 집안에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을 숨기기 위해 손님이 오는 날 하루 종일 방안에 갇혀 있었던 기억은 장애를 숨기려고만 했던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

가. 장애인차별법의 발의과정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

-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활동을 시작
- 본격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운동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
- 1990년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
- 2000년 한해 장애인 인권단체에 접수된 장애인의 차별상담건수가 1천 여건을 넘어 가면서 장애인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 시작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영국에 연수를 다녀온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

2) 장애인단체 힘을 모으다

- 2003년 4월 15일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가 출범
- 장애유형과 활동의 범위, 단체의 규모,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구분없이 전 장애계 단체 58개가 참여
- 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형태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 본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시작

3)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1)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다.

- 30~40명의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이 매주 만나 라이프 스토리 형식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경험을 나눔

- 장애인당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률가들과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념을 정리하고 기본 골격을 구성
- (2) 2003년 6월~10월 9차례 연속공개토론회진행
-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당사자의 차별경험을 모아 매주 1회씩 분과별 논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
- (3) 2004년 5월 대규모 토론회 개최
- 100명의 인원이 1박2일간 참여해 초안을 검토
- (4)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진행
- 지역별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8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했죠.
- (5) 2004년 11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설명회를 개최
-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자문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

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입법발의과정

- 2005년 3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홍보
 -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촛불문화제, 결의대회,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진행
- 2005년 9월 20일 국회 발의를 통해 각 정당에 법안 발의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 간담회와 토론회 진행 후 발의가 결정되었습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결성
 - 문화제 개최,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를 위한 전동 휠체어 거리행진, 대표자 9인 삭발식, 지역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등의 법제정 촉구 활동을 진행
- 연대단체가 82개 단체로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통해 독립적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

- 장애인 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대통령 자문 차별시정위원회의 제안
 - 정부 12개 부처와 함께 논의를 진행
- 2006년 12월 18일 각 당의 법안이 발의
 - 장항숙의원 대표발의(총54명 의원 공동발의 서명)
 - 정화원의원 대표발의(총38명 의원 공동발의 서명)

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국회통과와 시행과정

- 1) 국회발의 3가지 발의안에 대한 의견조정
- 정당 별 발의안 3가지에 대한 의견 조정작업 추진
 - 쟁점사안인 ‘장애개념’, ‘시정명령권 명시’, ‘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 내용을 결정
- 2) 2007년 3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 후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3) 2007년 4월 10일 대통령 공개 서명식 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포
 - 4)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배제한 정부 단독의 시행령 마련 논의를 저지하고,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령안을 완성
 - 5)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각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6)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 1)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
- 지금까지의 장애관련법은 시혜의 대상인 장애인을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형식으로 대부분 진행
 - 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법의 주체적인 대상자로서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최초의 법이 되었음.

- 수동적인 장애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장애인의 모습을 사회 전반에 각인
 - 정부부처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장애당사자의 목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
- 2) 모든 장애인단체가 함께 모여 제정
- 장애인단체들은 각 단체별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운영형태, 장애유형별로 나뉘어 활동
 - 각 단체들이 입장 차이를 모두 배제하고 처음으로 다 함께 모여 만듦
 - 장애인 차별이라는 문제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한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법의 제정이 가능했음.
- 3) 사회적 차별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
- 차별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임에도 차별금지에 대한 법제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정의나 판단의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사회 전반에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차별금지의 필요성을 제시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과 구성

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제1조)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었을까?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만듦
- 오랜 시간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 받는 존재로 또 당연히 차별 받아도 되는 존재로 살아왔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단순히 교육이나 일시적인 제도개선 만으로는 바꾸어나가기가 어려웠음

- 좀 더 강력한 법의 형태를 통해 차별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
-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하기 위한 목적
-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구성

-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와 차별 받았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것인가’라는 두 개의 큰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1장
 -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3조 정의, 제4조 차별행위, 제5조 차별 판단, 제6조 차별금지,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구성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장
 -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4절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6절 가족, 가정, 복지 시설, 건강권 등
- 3장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 4장은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 5장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 6장은 벌칙.

☞ 개념보충: 법의 구성요소

- 첫째, 목적과 정의에 대한 설명, 둘째, 법의 중심 내용, 셋째, 처벌이나 벌칙조항의 순서로 구성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비교적 짧은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는 편임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구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다른 법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디쯤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꼭 알아야할 것들

1. 장애에 대한 범위가 다른 법과 다르다

- 국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15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만 관련한 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결국, 15개 장애유형이나 장애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손상이 일상이나 사회 생활에 제약을 초래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대상자로 보고 있음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 입원 거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이다.”

HIV/AIDS 감염인 당사자들이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하는 요양병원과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정부 부처를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병원관리인: 우리병원에서는 감염인을 받아들일 격리병실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 28군데 요양병원에서 모두 감염환자 입원을 거부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등록장애인이 아니지만, 이는 명백한 차별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이 환자들은 입원 거부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보고 요양병원과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정부 부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HIV/AIDS 감염인 역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아니지만, 감염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면역력 저하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2. 장애인 1명만 있어도 모두 ‘복지시설’

- 기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근거로 이야기해왔음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그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곳을 모두 시설로 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의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법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

“노부부에게 보내진 지적장애인 헤민씨

지적장애인 헤민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척은 헤민씨를 어느 노부부에게 보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니까 청소하고 빨래부터 시작하자구!

할아버지: 뭐? 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헤민이한테 쓸모나 있겠어?

이 노부부는 헤민씨를 돌봐준다고 하면서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노부부의 수발과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10년 이상 생활해왔습니다.

헤민씨는 노부부의 집을 떠나 밖으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노부부는 헤민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내 자식 내가 맘대로 하겠는데 댁들이 무슨 상관이야?

할아버지: 우린 그 동안 이 아이를 보호해 주고 있었던 거라고!

위 사례에서 가족관계는 아닌 노부부와 헤민씨의 관계에서 물론 노부부는 형사적으로도 헤민씨에 대하여 괴롭힘과 학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노부부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을 1인 이상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30조 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모두 적용 받게 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장애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4. 장애인이 차별을 받으면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장, 제5장)

1)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가 당한 차별에 대하여 진정 요청

- 진정은 전화, 이메일, 진정서작성하여 제출, 방문상담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에 전화를 해서 차별상황을 이야기한 후 진정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처리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진정 이후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 법원에 차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임시조치: 법원에 차별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
- 차별구제청구소송: 소송을 통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
 - 예)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을 경우 차별구제청구소송을 통해 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5.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함(장애인 차별금지법 47조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 또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함
- 의료소송 등과 달리 사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둬으로써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항임

4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담지 못한 이야기

가.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이야기를 통해 만든 법, 그래서 담지 못한 이야기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겪은 차별이야기를 통해 차별의 내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법으로 정리해서 만들었음
-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언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많이 담길 수 밖에 없었음

나. 2007년 제정 당시 사회적 환경과 2016년의 변화와 차이

- 2016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의 보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SNS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보편적인 통신환경으로 자리를 잡았음
- 2007년 당시에는 전혀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라 현재 법 내용은 기술발전 환경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홈페이지상에서의 장애인 접근성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
- 장애인도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체육 예술활동 이외에도 관광 등 여행에 대한 욕구와 실제 여행을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행이나 관광 등에서의 차별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

다. 차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부족

- 제정 당시 경제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을 가했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너무 약화되었음
- 현재 법률상 인권위, 법무부, 법원 등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사법과 같은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거의 없음
- 2016년 현재 강제력을 갖고 있는 법무부 시정명령 단 3건, 이는 인권위와 법무부의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
- 그 외 손해배상청구 및 차별구제청구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개인에게 변호사 선임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상황
- 2016년 현재까지 단 한 건만이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인정받았음
- 법원이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임.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생활 전반의 차별을 규정하는 유일한 법이다.
- ② 2003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출범하면서 제정활동을 시작하였다.
- ③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처음부터 법률가들이 모여서 법적기준과 원칙에 맞게 만들었다.
- ④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다.

○ 정답 | ③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처음부터 법률가들이 모여서 법적기준과 원칙에 맞게 만들었다.

○ 해설 |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 40여명이 매주 만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차별경험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률가들이 법률로 정리했다.

2. 다음 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중 실제 내용과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제1장 총칙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② 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밖에 없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이 정하는 장애차별시정기구이다.
- ④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정답 | ② 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밖에 없다.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외에도 법무부 시정명령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차별구제청구소송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다음 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장애를 갖고 있는 외국인
- ② HIV감염인 중 신체적 기능상실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람
- ③ 가족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노인
- ④ 임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의 가사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 정답 | ③ 가족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노인

○ 해설 | ①, ②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며 장애인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서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킨다.



정리하기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에 공포되었음
-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으로 본법 50조 시행령 30조로 구성되어 있음
- 2003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출범시키면서 전 장애계 단체 58개가 참여하여 제정활동을 시작
- 장애인당사자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적인 차별이야기를 토대로 만들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

1)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

-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 주며 정책입안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2) 모든 장애인단체가 함께 모여서 법을 제정

-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장애유형별 입장차이를 모두 배제하고 함께 모여 만들어 냄

3) 사회적으로 차별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

- 차별에 대한 정의나 판단의 기준 등을 규정, 사회전반에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차별금지의 필요성 제시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구성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구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과 그래서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것인가’라는 두 개의 큰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음

3)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꼭 알아야 할 것

- 장애인복지법의 15개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사람만을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상에 의해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모두 장애의 범위로 분류
- 복지시설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 이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곳을 모두 포함
-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시정기구이며, 장애인은 차별을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할 수 있음
-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

제7강



차별의 판단 및 정당한 편의 제공

1.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 차별
2.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3. 공유하기

제7강

차별의 판단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생활 전반에서의 차별을 규정하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인권법으로 차별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행위 금지 내용은 사회 전반의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장애인 차별뿐 아니라 차별 전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으면서도, 내가 만나는 이 상황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근거법이 되어주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거부, 분리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차별의 판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의 판단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7강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의 판단 및

학습목표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 차별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의 정의를 알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 차별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가. 장애인 차별의 개념

1. 직접차별

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2. 간접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광고에서의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는 경우이다. 광고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효과만 있어도 모두 광고에서의 차별이다.

4.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을 대리·동행하고 돕는 사람과,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이들을 도와주는 후견인이다.

5. 정당한 편의

장애인의 성별,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 및 조치이다.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편의시설이나 설비는 물론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인적지원도 모두 해당된다. 편의의 내용이나 종류 등을 세세하게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당사자가 장애로 인해 필요한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당한 편의이다.

6. 의사소통조력인

형사사법절차의 의사소통조력인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도와주거나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규정

장애인 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행위에 대해 규정하여 차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차별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장애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요청해도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에 대하여 적절치 않게 표현하고 있을 경우는 모두 차별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을 거부하거나, 비하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보조기구를 임의로 움직이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건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도 모두 차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갖기 못하는 것도 차별이다. 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차별의 한 가지 형태이다.

다. 차별했지만 차별이 아닌 경우

차별의 판단에 있어서 실제로 차별가해자가 너무나 큰 부담을 져야 하거나 실제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예외조항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3항

-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
-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구조상 할 수 없는 경우
- 차별받은 피해자가 보편적 사회상식선에서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경우
- 차별 행위가 특정적인 직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4항

- 다른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음
- 실질적 평등권 실현과 차별시정을 위한 다른 법령의 적극적 조치
- 장애인이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예) 법령에서 장애인고용할당제나 장애인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차별로 보지 않는다.

2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

가. 다음 상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되는가?



사례 1

현진이: 나도 현장학습 가고 싶어...

내레이터: 내일은 현진이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며칠 전부터 현진은 내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 현진은 내일 현장학습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그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진이 담임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내일 현장학습에 현진이는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현진이라도 많이 불편할테고 현진이만 따로 챙기기 어려워서 위험할 수 도 있어요.

어머니: 현진이가 며칠 전부터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크겠네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학교에서 각 반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란 따로 모아서 통솔하는 교사가 있긴 한데 다른 반 장애아들도 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장애그룹이 없어졌어요. 현진이라도 다른 장애아처럼 집에서 쉬는 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레이터: 결국 현진이는 현장학습에 참여하지 못했고,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례 2

“저에게도 시험 볼 기회를 주세요.”


시각장애인인 준호씨는 제법 규모가 큰 회사의 모집공고를 보고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모집공고에 장애인의 입사를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준호씨는 대학시절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다양한 경력으로 서류전형에서 당당히 합격했고, 벅찬 마음으로 며칠 후 면접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면접시험은 회사에서 나누어주는 면접시험 문제지에 관련내용을 읽고, 그것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임을 회사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점자 문제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씨: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점자 문제지가 없다면 문제지를 파일로 주셨으면 합니다. 제 노트북에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리더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니 문제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직원: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상 문제지 파일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내레이터: 난감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간신히 주위들은 내용으로 면접시험을 마치고 나왔는데, 준호씨는 과연 이 회사가 나를 뽑겠다는 생각이 있는것인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3

광고에서의 장애인 차별

최근 한 보청기회사의 TV 광고에서 보청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청력이 곧 능력이다’ 라는 광고카피를 사용하여 마치 청각장애인은 청력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여 청각 장애인들에게 크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사례1)은 직접 장애를 언급하고 제한하는 경우가 직접차별에 해당된다.

사례2)는 형식적으로는 장애인을 고용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 면접시험에서 장애유형을 고려한 지원을 하지 않아서 다른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배제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로 간접차별에 해당된다.

사례3)은 광고에서의 차별이다. TV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알려지는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의 형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교과서, 공문서 등의 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광고에 의한 차별행위이다. 광고에 의한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광고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회적으로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나. 다음 상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되는가?



사례 4

내레이터: 임신 5개월의 수정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요즘 많은 지역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정씨도 집 근처 보건소를 찾아가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과정에서 수정씨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화통역사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보건소를 찾은 수정씨는 신청할 때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상 프로그램 첫날이 되자 보건소측에서는 수화통역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냥 화면의 설명을 보면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직원: 죄송하지만, 수화통역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구하지 못했어요. 화면에 설명이 나오 니깐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내레이터: 수정씨는 일단 화면으로 제공되는 설명을 보면서 해보려고 했지만, 화면설명만을 보면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설명하고 수화통역사 배치를 거듭요청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자원활동으로 수화통역사를 구해야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수정씨는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례 5

뇌병변장애인인 윤수씨는 이번 선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어서 선거참관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선거당일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소로 찾아가 윤수씨에게 지역선관위 담당자가 투표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담당자: 활동보조인은 선거참관인이 아니니 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앞에서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들어오세요.

 사례 6


내레이터: 제주도에 사는 시각장애인 호준씨는 안내견을 데리고 조카들과 함께 커피숍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청결유지를 위해서 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며 안내견도 동물이니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준씨는 안내견이 일반적인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되어 주는 보조견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례 4)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의무적용기관으로 사례의 보건소처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강력한 의무를 갖고 있다.

사례 5)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한 장애인 관련자를 차별한 경우이다. 활동보조인 즉, 장애인관련자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므로 명백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이는 장애인도 차별을 받은 것이다. 장애인으로부터 활동보조인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리하는 행위로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을 밀착해서 지원하는 사람으로 보조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용인과 분리할 수 없다. 그 장소와 투표소와 같은 특수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사례 6)은 보조견 보조기구 사용방해에 해당되는 차별입니다. 장애인에게 보조견이나 보조기구는 자신의 신체 일부와 마찬가지로이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일부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도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명백하게 차별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다. 장애인 차별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

 사례 7. 장애인들을 어떻게 강습해야 하지?

유진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으로 집 가까이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영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의 약해진 하체 건강을 위해서는 수영이 좋다는 주변의 말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유진씨, 그런데 수영강습을 받기 위해 찾아가 첫날, 유진씨에게 직원이 얘기했습니다.

직원: 혼자 오셨어요? 저희는 도와드릴 사람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모르고 오셨으니 직원이 도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꼭 도와줄 분과 같이 오세요.

유진씨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이나 샤워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수영강사는 장애에 대해 전혀 모르는지 유진씨한테 어떻게 강습을 해야 할지 찢찢했습니다.

사례 7)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 장애인편의시설 구비와 보조인력을 포함한 인적지원이다. 수영장 직원이 도와줄 사람과 함께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라 수영장에 보조인력을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당한 편의는 인적자원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수영강사나 수영강사 보조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안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3 공유하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중 내가 경험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이 설명하는 차별은 어떤 종류의 차별인가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① 직접차별
- ② 간접차별
- ③ 광고에서의 차별
- ④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답 | ④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해설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2. 다음 사례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뇌병변 장애인인 윤수씨는 이번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어서 선거참관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소로 찾아간 윤수씨에게 지역선관위 담당자가 투표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은 함께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들어오라고 합니다.

- ① 지역 선관위 담당자
- ② 윤수
- ③ 활동 보조인
- ④ 윤수, 활동보조인

- 정답 | ④ 운수, 활동보조인
- 해설 | 이 사례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첫 번째는 활동보조인이다. 장애인 관련자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므로 사례는 명백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차별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으로부터 활동보조인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리하는 행위는 차별이다. 즉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을 밀착해서 지원하는 사람으로 보조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용인과 분리할 수 없다. 투표소와 같은 특수한 공간이라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3.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성인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람
- ② 장애인 전문 수영강사가 없어 수영강습을 받지 못한 사람
- ③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시설의 보조인력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
- ④ 주민센터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사람

- 정답 | ① 성인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람
- 해설 | 동일한 조건에서 성인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된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하기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차별

①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광고에서의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④ 장애인관련자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모두 포함

⑤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⑥ 의사소통조력인

-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조력하기 위해 함께 동석하여 소통을 지원하는 사람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들

- 직접 장애를 언급하면서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장애인은 무조건 배제시키고, 무엇

인가를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직접 장애인은 싫다고 거부하는 행위

-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실제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
-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광고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장애특성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행위
- 장애인을 돕기위해 대리동행하는 사람, 즉 장애인의 부모나 활동보조인 등 지원을 위해 함께 동행한 사람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행위
- 장애인보조견과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당사자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8강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1.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란?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들
3. 공유하기

제8강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를 어떤 상황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차별 중 한 가지는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타 다른 차별행위보다 더 앞선 조항에서 규정함으로써, 그 어떤 차별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권리이며, 침해할 경우 명백한 차별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항상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존재라는 차별적인 인식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원하고 있는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차시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침해에 의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통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습목표

-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개념을 알고, 보편적인 기본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위험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침해의 사례를 통해 차별여부와 차별로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란?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들

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1. 자기결정권의 의미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라고 정의한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개인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 개념보충: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를 말한다. 행복추구권은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자기결정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라고 정리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말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 당한다고 주로 느끼는 대상은 주로 장애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부모와 활동보조인, 각종 장애인관련시설과 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교사 등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가장 크게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 실생활의 대화 속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

1. 부모의 언어

네가 혼자서 어떻게 산다고 자립이야.
그런 건 배워서 뭐하니? 어차피 취업하기도 힘들 텐데.
너는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잠자코 따라와.
아이고 성치도 않은 몸으로...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2. 활동보조인의 사례

비 오는 날 어딜 나가려고 해요?
감기 기운 있어서 차가운 물은 안돼요, 그냥 따뜻한 물 드세요.
내 말 들어요, 00씨가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뭘 힘들게 같이 가요, 내가 혼자 마트 빨리 가서 장 봐올게요.

3. 시설종사자의 사례

건강에 나빠요,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돼요.
추울 것 같아요, 이 옷 위에 더 입으세요.
1층에 내려오시면 안돼요. 밖으로 나가시면 안돼요.
미용 봉사 오신 거니까 머리모양 해주는 대로 가만히 계세요.

4. 선생님의 사례

00는 잘 못하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
힘드니까, 현장학습 가는 날 집에서 쉬어라.
다치겠다, 너희들 00는 건드리지마.

위의 사례에서 나온 말들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차별은 쉽게 던져지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 속에는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제나 약하다'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들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가.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뇌병변장애인이인 철수씨는 어제 저녁부터 복통과 설사, 열이 나는 증상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활동보조인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찰을 받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간 철수씨는 본인의 증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 의사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철수씨의 모습을 본 의사는 활동보조인을 쳐다보면서 철수씨의 증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철수씨는 그래도 한 번쯤 의사가 자신에게 질문할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의사는 활동보조인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례는 아픔을 느끼는 당사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병원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상황을 묻지 않는 행위는 이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이 사례에서 차별가해자자는 두 사람이다. 첫 번째는 의사이다. 이미 성인인 장애인 당사자가 환자로 방문했을 경우 당연히 아픔을 느끼는 장애인당사자의 상황을 본인을 통해 직접 듣고 판단했어야 한다.

두 번째 가해자는 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이다. 의사가 비장애인인 자신에게 의견을 물을 경우, 진찰을 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본인이며, 당사자에게 물어보도록 정확한 태도와 입장을 보였어야 한다.

나. 차별이라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사례를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레이터: “반장엄마는 전데요...”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영희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된 영희씨에게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무척 많은 딸 은하가 있어서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 은하가 반장이 되었다면서 너무나 신나게 집으로 뛰어 들어 왔습니다.

영희씨도 기뻐하는 은하 모습에 함께 기뻐하며, 일 년 동안 반장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의논하기 위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씨의 전화를 받은 담임선생님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반장 엄마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면서 힘들게 학교에 왔다갔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간혹 차별은 배려와 등을 맞대고 있다. 이 사례는 영희씨를 배려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영희씨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희씨에게는 차별이 된 것이다. 이 사례에서 담임선생님은 영희씨의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다. 영희씨가 반장엄마로서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차별의 가해자는 장애인 당사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각장애인은 더 위험하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진형씨는 방학을 맞아 같은 시각장애인 대학생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전맹인 친구, 약시장애인인 친구, 그리고 비장애인 친구 이렇게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일행은 신나게 놀이공원을 돌면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동산에서 가장 무섭고 유명한 놀이기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와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시각장애인은 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면서 이용을 막았습니다. 이유를 따져 묻는 진형씨에게 직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이기구의 진행에 대해서 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놀이기구가 멈추거나 할 경우에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서 대피가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이용여부와 놀이기구 선택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취급하며 비장애인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더불어, 놀이기구 이용 시 사고에 대한 대처는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업체의 책임이다.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고의 책임을 모두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이 사례에서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업체는 장애인에게 이 놀이기구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행되는지를 설명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

라. 왜 사람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우리아이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애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보호해줘야지 아니면 너무 세상이 우리 애한테는 위험해요, 애가 뭘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런 것 못해요”

“우리시설 거주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저희가 지키고 보호해 드려야 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 못하세요, 다 저희가 해드려야 해요”

“우리 이용인은 내가 뭐든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요, 그리고 이용인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대신 해주는 게 편할 거예요”

“장애인이 혹시 다치실까 봐 저희 4D 영화관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비장애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사결정권과 선택권은 안전과 보호가 확보된 후에 고민해야 할 권리로 인식한다. 하지만 세상은 매우 불완전한 곳이다. 꼭 장애인 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모두 그런 위험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적절히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회 원칙 안에서조차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기본적으로 배제되고 분리되어 마치 비장애인과 비교해 항상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다.

3 공유하기

나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는 순간과 그 때 들었던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이 설명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 ① 자연권 ② 선택권 ③ 행복추구권 ④ 자기결정권

○ 정답 | ④ 자기결정권

○ 해설 |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개인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입니다.

2. 다음 사례에서 차별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두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뇌병변장애인인 철수씨는 어제 저녁부터 복통과 설사 일어나는 증상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아침에 활동보조인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철수씨의 모습을 본 의사는 활동보조인을 쳐다보면서 철수씨의 증상을 묻기 시작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철수씨는 그래도 한 번쯤 의사가 자신에게 질문할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료가 모두 끝날 때 까지 의사는 활동보조인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① 의사 ② 철수, 의사 ③ 활동보조인 ④ 의사, 활동보조인

○ 정답 | ④ 의사, 활동보조인

○ 해설 | 이 사례에서 차별가해자는 두 사람이다. 첫 번째는 의사이다. 이미 성인인 장애인당사자가 환자로 방문했을 경우 당연히 아픔을 느끼는 장애인당사자의 상황을 본인을 통해 직접 듣고 판단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인력이다. 의사가 비장애인인

자신에게 의견을 물을 경우, 진찰을 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본인이며, 당사자에게 물어보도록 정확한 태도와 입장을 보였어야 한다.

3.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함께 동행한 비장애인과 이야기 나누는 행위
- ② 배려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
- ③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
- ④ 장애인이 안전에 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는 것

○ 정답 | ④ 장애인이 안전에 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는 것

○ 해설 | ④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기

1.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 ①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란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예) 성적자기결정권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입니다.
- ③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말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차별은 쉽게 던지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시작함.
 - 이 말들 속에는 장애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언제나 약하다.' '함께하기 어렵다.' 라는 의미들이 함께 있습니다.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들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

-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함께 동행한 비장애인 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명백한 차별행위
- 배려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 또한 아무리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호의적인 마음에서 비롯했다라도 장애인에게는 차별행위
-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이 위험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한 것이 필요

2)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 함께 살아가는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은 보호하고, 도와주고,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사결정권과 선택권은 안전과 보호가 확보된 후에 고민해야 할 권리로 인식
- 세상에서는 꼭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모두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적절히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음. 이렇게 기본적인 사회 원칙 안에서조차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기본적으로 배제되고 분리되어 마치 비장애인과 비교해 항상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음.
- 장애인이 위험을 선택할 권리까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고 세밀하게 보장해야 함

제9강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차별 이야기

1.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2.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3. 공유하기

제9강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차별 이야기

비장애인은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13살이 되면 중학교에 16살이 되면 고등학교에 갑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기간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최소 12년쯤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나면 우리는 사회 속으로 일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직업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학교나 일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삶은 어떤가요? 장애를 이유로 학교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입학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특수학교나 장애인직업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마치 엄청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곤 합니다.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교육과정은 장애인이 이후에 일터를 얻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려 할 때에 회사들은 학교보다 더 큰 차별의 장벽을 세우고 장애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 조항은 다른 어떤 차별보다 일터와 학교에서의 차별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인이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고용과 교육과정에서의 차별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차별에 대한 대응의 방향까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고용에서의 차별을 이해하고 차별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에서의 차별을 이해하고 차별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용과 교육에서의 차별사례를 통해 차별여부와 차별로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가. 노동권의 개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노동권의 개념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권은 일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근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노동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 비단 한국 뿐 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도 노동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나. 교육권의 개념과 특수교육

1. 교육권의 개념

-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에도 우리나라 헌법처럼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은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3. 특수교육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 장애, 지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되거나 평가된 사람이 모두 대상자가 된다.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등의 과정을 교육 하는 기관을 특수학교라고 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한다. 특수대상자 교육은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순회교육 등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4.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은 통합교육이라고 한다.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 때문에 등하교가 힘든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이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

5. 장애인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을까?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진단과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정
- 거주지에 가까운 통합학교나 특수학교로 배치
- 장애정도가 심해서 결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순회교육 실시
-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서 이동용보장구나 교육보조인력, 보조기구, 의사소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음
- 정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은 장애인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는 장애학생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함

2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가. 고용에서의 차별 상황

1. 다음 질문을 기억하면서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 차별이라면 이야기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례를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 1

주희씨는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하던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새로 이사한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근처에 있는 유기농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근무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희씨는 우선 찾아가기 전에 매장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보던 주희씨는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걷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희씨: 물품 정리나 판매를 못할 정도로 불편하진 않는데... 하지만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원해되 되는 걸까?
 내 능력만 봐준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례는 명백한 채용광고에서의 차별이다. 현재 사업체에서 모집공고를 낼 때 ‘심신이 건강한 사람’,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 등 장애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앞의 사례에서 업체는 전국의 다른 지점들도 모두 동일한 자격조건으로 구인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업체는 모집공고를 수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례 2

뇌병변 장애인인 지원씨는 얼마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여러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씨: 대학시절에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도 다양하게 취득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학점관리도 잘한 편이고.. 회사에서 장애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봐준다면 나도 취업할 가능성이 있어.

내레이터: 하지만, 입사지원서를 쓸때마다 많은 회사들이 입사지원서의 특이사항에 장애유형과 등급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고, 언어장애도 갖고 있는 지원씨는 뇌병변 장애1급이라고 표시를 하면 분명히 서류심사에서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표시하지 않고 제출하면 이후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원서를 쓸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례는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해당된다. 입사지원서에 장애유형이나 등급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이다. 입사지원서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경력과 실력만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여기에 장애유형이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면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제대로 된 평가나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입사지원서 제출 시 관련서류에 장애와 관련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역시 차별이다.



사례 3

혜정씨는 최근 3년간 일하던 장애인센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혜정씨는 뇌병변장애인이지만 휠체어 등의 보장구 없이 이동이 가능하고, 사회복지 쪽의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련한 장애인단체 1곳 복지관 1곳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면접이 있는 날 혜정씨는 이미 10년 가까이 사회복지사로 다양한 곳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면접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면접에서는 혜정씨의 경험이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혜정씨의 언어장애에 대한 질문만이 쏟아졌습니다.

면접관: 언어장애 때문에 전화를 받거나 전화로 해야하는 업무는 하기 어렵겠네요, 우리는 지역에 지부가 많아서 전화로 업무를 많이 해야하는데...,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혜정씨: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하면 전화하신분도 알아들으실 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다른 직원과는 SNS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급한 일은 바로 쫓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면접관: 아니 이 바쁜 세상에 언제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있어요!

내레이터: 그 후로도 면접과정내내 언어장애로 불편할 것이라라는 취지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면접관들은 모두 혜정씨의 말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이다. 면접을 볼 때 장애로 인해 채용 응시자의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차별이다. 사례의 혜정씨는 자신의 언어장애에 대해 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면접관들의 모습에서 탈락을 예감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후로는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다고 한다.

2. 다음 질문을 기억하면서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2. 차별이라면 이야기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례를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 4

홍권씨는 이 공장에서 일한지 1년정도 되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관리자들이 장애인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태도와 계속되는 야근, 휴가도 없이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모습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특히 자신도 교회에 다니지만, 점심시간에 밥을 먹자마자 휴식시간도 없이 무조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월요일 조회 때 주말에 교회에 다녀왔는지 물어보고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악마라고 하는 사장의 모습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비장애인 한 사람이 공장에서 장애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홍권씨는 그때 노동조합이라는 곳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연락을 받은 장애인인권단체 사람과 노동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인권단체직원: 공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권씨: 점심을 먹으면 휴식시간을 주지않고 예배를 봤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분들은 항상 욕을 하며 심하게 말했습니다. 대체휴무일에도 항상 나와서 일해야 했고 철야 근무를 했는데 택시비를 주지 않아서 집까지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비장애인 관리자들이 장애인들을 관리감독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적으로 탄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내부 상황을 알린 사람을 다른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차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 교육에서의 차별 상황

다음 질문을 기억하면서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 다음 상황에서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례 5

뇌병변장애인 선영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입학전 특수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맞는 높낮이 조절 책걸상과 보조원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학할 하자 선영이에게 맞는 책걸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자 아이인 선영이에게 남자보조원이 화장실을 보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실이 좁고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은 휠체어를 교실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결국 선영이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 장애학생에게 맞는 시설이나 보조용구,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사례에서 학교는 선영이를 위한 높낮이 조절 책걸상과 여학생에게 맞는 보조인력을 배치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선영이에게 가장 큰 차별이 된 것은 교실 안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담임교사의 태도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상 장애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장구를 분리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차별이다. 오히려 휠체어의 이동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공간을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례 6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혜영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기 어려운 혜영이에게 음악선생님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리코더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물론 혜영이는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결국 시험 점수는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편의는 단순히 보조용구나 보조인력처럼 직접 눈에 보이는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학습이나 평가과정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혜영이는 리코더의 원리와 연주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평등한 평가방법입니다.

2. 다음 상황에서 장애 학생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례 7

발달장애인 현우는 오늘도 통합반 수업시간에 쫓겨났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현우가 조금만 책상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내거나 하면 보조선생님에게 무조건 현우를 데리고 특수학급에 가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이나 체육활동 등의 행사에는 현우를 함께 데려가지 않아서 특수학급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안 된다고만 이야기 하며 엄마가 같이 가야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매번 따라갈 수 없는 엄마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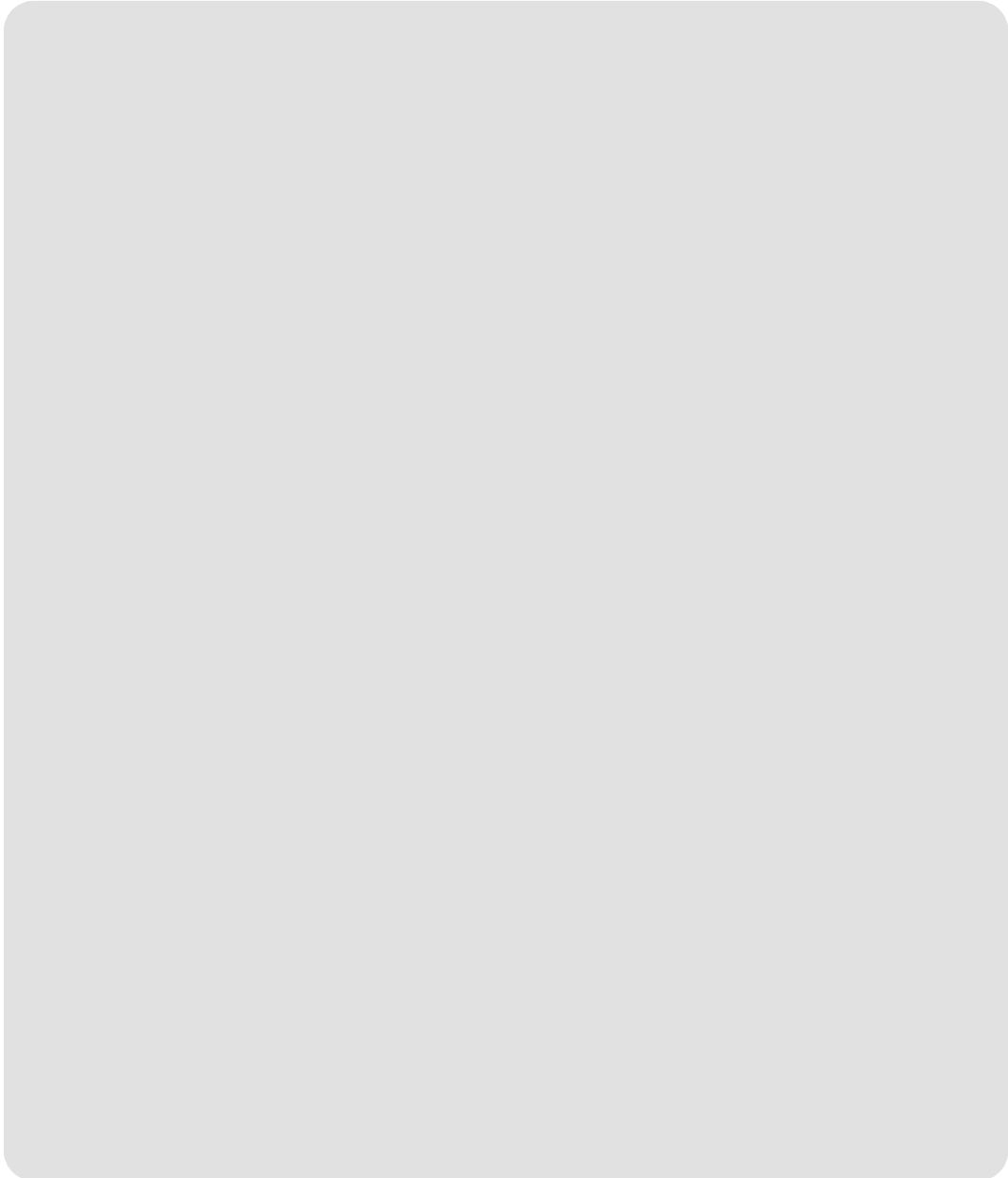
발달장애아동은 그 장애특성상 교실 안에서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도 반에 속한 학생으로 자신의 장애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발생할 시 교사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비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학습에서 장애아동을 배제하거나, 비장애아동과 달리 엄마의 동행을 요청하는 행위는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이다.

3

공유하기

학교생활 중 장애를 가진 친구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장애 친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특수교육교원이 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특수교육은 무엇인가요?

- ① 개별화 교육 ② 통합교육 ③ 순회교육 ④ 정규교육

○ 정답 | ③ 순회교육

○ 해설 |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다음 중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 ① 자격조건에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기한 경우
 ② 면접 시 업무와 무관한 장애에 대해 질문한 경우
 ③ 자격조건에서 토익 700점 이상일 것이라고 표시한 경우
 ④ 지원서에 장애유형이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 정답 | ③ 자격조건에서 토익 700점 이상일 것이라고 표시한 경우

○ 해설 | 3번의 토익 700점이라는 조건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지원한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이 될수 있는 조항이다.

3. 장애인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
 ② 거주지와 멀더라도 장애인 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로 배치
 ③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④ 이동용 보장구 대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각종 보조기구 및 의사소통수단 등 요청 가능

- 정답 | ② 거주지와 멀더라도 장애인 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로 배치
- 해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한다.



정리하기

1.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① 노동권

근로와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③ 교육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만든 법.

⑤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⑥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2. 일터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① 고용에서의 차별 상황

- 채용광고에서의 차별: 장애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행위
-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지원서에 장애유형이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행위
- 면접과정에서의 차별: 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닌 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질문하는 행위
- 일터에서의 차별: 관리감독의 명목으로 장애인을 인권적으로 탄압하는 행위

② 교육에서의 차별

-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맞는 시설이나 보조용구, 보조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발달장애 아동이 도전행동을 보일 때 부적절한 반응: 장애학생이 장애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10강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차별

1.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2.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3. 공유하기

제10강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거래,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 개인정보보호,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학교와 일터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공받게 되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범위가 넓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실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차별 상황은 재화 용역의 제공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상에서의 차별, 이번 차시에서는 지하철이용에서 놀이공원이용까지 장애인이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차별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무엇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방안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습목표

- 재화와 용역에서의 분야별 차별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재화와 용역에서의 차별사례를 통해 차별여부와 차별로 판단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재화와 용역에서의 분야별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가. 재화와 차이와 차별의 정의

1. 재화와 용역의 개념

1) 재화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형체가 있는 물품

2) 용역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활동이나 작용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
예)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2. 접근권의 개념

1) 접근권

- 장애인이 시설물이나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정보와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전자정보
 - 광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에 명시
- 비전자정보
 -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 음성, 문자, 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나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에서 명시

2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가. 주거 임대에서의 장애인 차별

○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1

집주인: 장애인에게는 임대 안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수진씨는 영구임대아파트 당첨을 기다리며 다세대 주택으로 우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새건물이 아닌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깊이 얇은 지하나 1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나 가족이 대신 알아보고 계약이 결정된 이후에 수진씨가 직접가면 번번히 휠체어 장애인인 수진씨를 보고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주인: 장애인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전 장애인에게는 임대 안 합니다.

리프트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사갈 때 원래대로 해놓고 가겠다고 이야기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거래에서의 차별 상황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인 경우 편의 시설 문제 때문에 주거 공간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집주인이 장애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더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시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건 장애인에게만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이다. 게다가 아직 그 수가 너무 부족해서 많은 장애인 들이 수진씨처럼 임대아파트 당첨을 기다리면서 일반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나. 주거 임대에서의 장애인 차별

○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2

은행직원: 장애가 있어서 체크카드 만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현철씨는 3년째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통장가운데 자주 쓰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씨가 체크카드를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은행직원: 혼자 오셨어요? 장애가 있어서 체크카드 만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랑 함께 오셔야 합니다.

현철씨: 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장애가 있는 것 뿐인데 왜 보호자랑 함께 와야 합니까?

큰 소리로 다시 이야기했지만, 직원은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 뒤쪽에 있던 과장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은행직원: 무슨 일입니까?

현철씨가 과장에게 다시 따졌고 그 사람이 '그냥 해드려' 하니 카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사례 3

진철씨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진철씨의 어머니와 진철씨는 진철씨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성년후견인이 없으면 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진철씨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눈 깜박임이나 손움직임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성년후견인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성년후견인이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외모나 장애 모습만 보고 차별을 하고 있다. 결국 카드를 만든 현철씨도 카드를 만들지 못한 진철씨도 모두 금융거래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융거래를 하려면 성년후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도 진철씨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제한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미 통장을 사용하는 있는 상황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발급해 달라는 것인데 은행 직원이 과도한 제한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다.

☞ 개념보충: 성년후견제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민법상의 제도
- 이전에 있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닌 치매노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이 있음
 - 성년후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상실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법정 대리인 역할을 부여
 - 한정후견: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대리인 역할을 부여
 - 특정후견: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지만,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서 대리권을 부여
 - 임의후견: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는데, 범위계약 안에서 당사자와 후견인의 계약을 통해 후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 대한 견제책과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제한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어서 피성년후견인이 법적권리를 모두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근본적으로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법적 권한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되는 제도로 지적을 받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를 받기도 함

다. 교통시설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4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영희씨는 오랜만에 주말을 맞이하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서 언제쯤 차를 배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바로 잡기도 어렵고 몇 시쯤 올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이면 그저 장애인콜택시가 올 때까지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야만 합니다. 결국, 영희씨는 저상버스를 타기로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다 보니 버스정류장은 너무나 복잡했고 사람도 많아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영희씨는 버스가 오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앞에 서고 싶었지만, 휴지통과 가로수, 버스정류장의 칸막이 등이 있어 앞으로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영희씨가 타려는 버스가 도착했지만 정류장보다 앞쪽에 도로와 비스듬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영희씨: 저렇게 비스듬하게 세우면 리프트를 내리기 힘들텐데...


버스기사: 죄송합니다. 리프트가 고장났어요.

내레이터: 영희씨는 결국 포기하고 좀 먼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요금도 무료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편인 지하철이 가장 편한 교통편이기는 합니다. 영희씨가 지하철 역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영희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꼭 채웠습니다. 결국 영희씨는 그 후로도 3번을 더 기다린 후에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영희씨가 승강장에 내려오자 바로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열차에 타기 위한 그 순간 영희씨의 휠체어 앞바퀴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빠져서 끼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영희씨를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전동휠체어 바퀴를 빼기 위해 다가왔고 남성 5~6명이 달려들어 다행히 휠체어 바퀴를 빼냈습니다. 영희씨는 너무 놀라서 그 열차를 보내고 다음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목적지가 두 정거장 정도 남았을 때 영희씨는 도착할 역에 이동식 발판을 가지고 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아까처럼 승강장 사이에 바퀴가 빠질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역무원이 이동식발판을 가지고 와줍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영희씨는 당황해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역을 지나쳤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지만 결국 목적지에서 4정거장이나 지나서야 겨우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만나기로 했던 비장애인 친구가 영희씨가 있는 곳으로 와 주었습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36.2%에 불과합니다. 영희씨 경우처럼 고장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구요. 또, 승강장과 열차 틈이 10cm 이상인 역도 110군데나 되서 최근 3년간 61개 역에서 휠체어 바퀴나 발빠짐 사고가 있었어요.

 사례 5

동우씨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우씨는 출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시각장애인은 복지콜이라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우씨는 출근시간에 복지콜을 이용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거나 출퇴근시간에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는 정해진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인 동우씨는 버스가 설 때마다 내가 탈 버스인지를 일일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우씨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지하철 역으로 가는 길 또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길 곳곳에 서있는 가로수 가지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아무 곳이나 세워져 있는 차량과 오토바이, 길가 상점에 열린 문, 길에 세워진 입간판 등 온통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과속방지턱도 보이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점자유도블럭은 곳곳이 끊어져 있어서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모르는 사이 인도가 아닌 도로 쪽으로 향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도착한 지하철 역에서는 탈 방향을 항상 외워두어야 합니다. 핸드레일이나 개찰구에 방향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스크린 도어가 없는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에 표시되어있는 점자유도블럭은 승강장 끝부분과 30c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짚어가다가 갑자기 철로쪽으로 지팡이가 빠지면 금세 중심을 잃고 떨어지게 됩니다. 동우씨의 친구들도 동우씨도 누구나 한번쯤 떨어져서 다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목숨걸고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들 소리에 섞여서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있거나 역의 수를 대강 헤아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점자유도블럭을 따라 걷다 보면 이상하게 계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만 다니라는 것인지, 점자유도블럭을 따라 가다보면 항상 계단을 걷게 됩니다. 매일 오고 가는 출근길이지만, 매번 다른 장애물이 길을 막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동우씨의 출퇴근길을 어렵게 합니다.

장애인복지콜은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이용 대상자는 2만 341명이다. 하지만 복지콜의 수는 142대로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라. 정보접근권에서의 차별

○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6

손기능이 약한 뇌병변장애인인데 인증번호 입력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판을 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팝업창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숫자나 글자를 입력해야만 하는 경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 7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팝업창이 연속으로 막 뜨는 경우 일일이 찾아서 닫아야 하고, 배너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리더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읽기가 어려워요.

사례 8

집에 가스렌지를 새로 바꾸었는데, 작동방식이 모두 터치패널인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제가 가스렌지를 혼자 사용하는 일은 드물지만, 한번은 어머니가 제가 터치패널을 쓸수없다는 사실을 깜박 잊으신 채 밖에서 가스렌지에 국을 올려놓고 왔는데 끄라고 하시는거예요, 쉽게 대답하고 끄러 갔지만, 아무런 표시도 음성신호도 없는 상황에서 무척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이용방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키보드 마우스 등 기기를 사용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 뇌병변장애인에게는 편리한 버튼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은 음성이 필요하며, 비장애인에게 편리한 신기술인 터치패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3년 4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이 끝나고 전면적용이 개시되어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홈페이지 등은 모두 웹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제품의 인증이나 판매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의 접근성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마. 여가활동에서의 차별

사례 9

수지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장애인입니다. 수지씨는 휠체어를 타지만 도와줄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수지씨는 친구가 함께 가기로 해서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예약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일에 저가항공사의 비행기값이 정말 싸게 나왔길래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장애인들만 오시면 안되고 비장애인이 함께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기로 한 유진씨가 청각장애인이지만 수지씨도 신체활동이 크게 불편한 편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자기네는 도와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장애인하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형항공사의 장애인할인을 이용해서 표를 예약했습니다.

렌터카를 예약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수지씨가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제주도 전 지역에 렌트회사 한곳에 딱 한 대가 있고, 수지씨가 가는 날짜에 이미 누군가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도 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무조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하루에 이용횟수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행기간 내내 매일 기다렸다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루에 여러 곳을 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저상버스를 이용해야지 생각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제주도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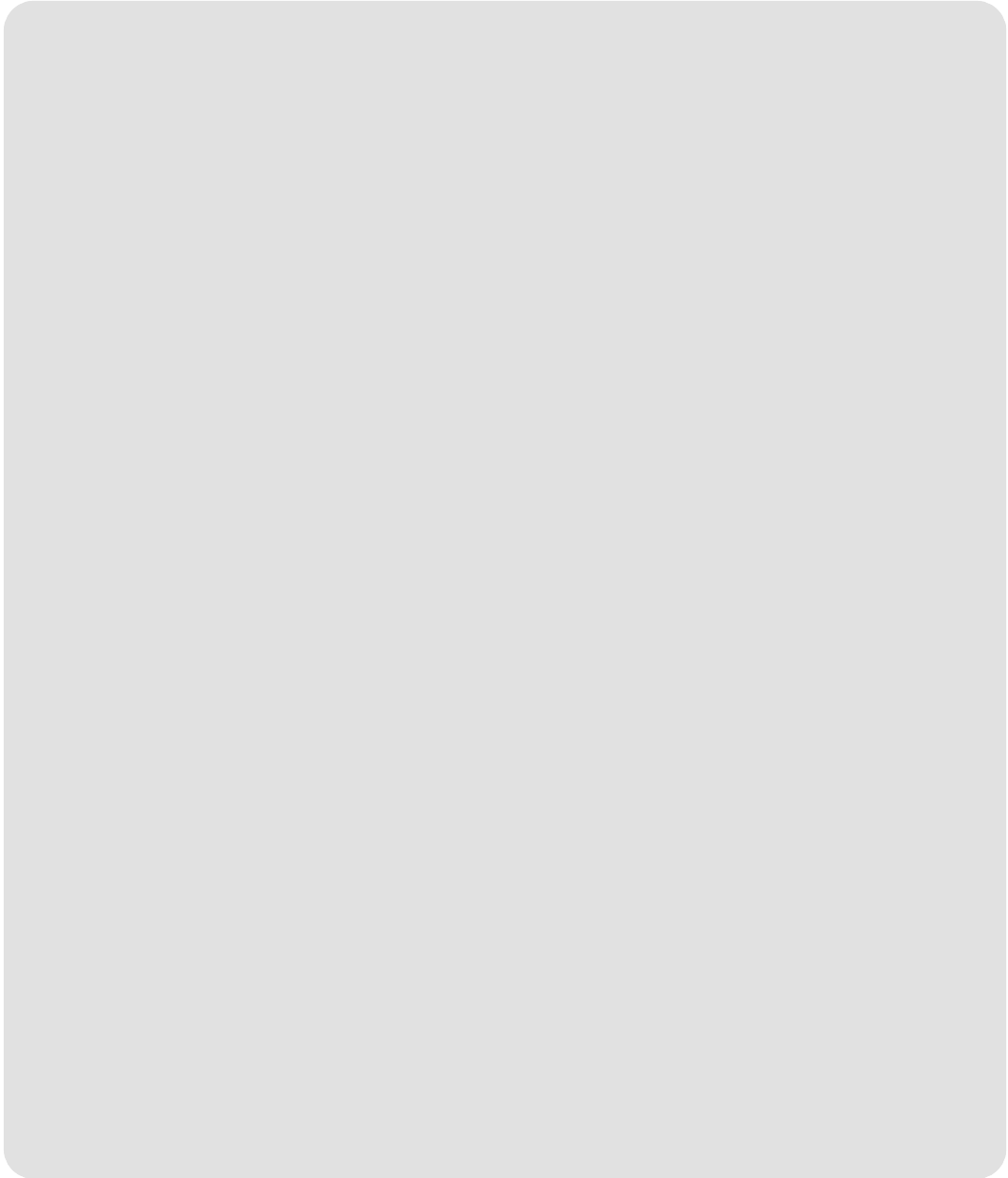
게다가 장애인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알아봐야 하는 것을 생각하니 그냥 다음에 제주도가 좀 더 장애인이 관광하는데 편리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지씨는 결국 제주도 여행을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례에서는 제주도 여행이 나왔지만 비단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교통편의의 문제, 숙박시설과 관광지의 편의시설, 기타 이동편의 등의 많은 장애인의 접근성에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시외로 가는 대중교통은 기차와 비행기만이 유일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시설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또한 관광지 곳곳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일년이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는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조차 편안하게 찾아가볼 수 없는 실정이다.

3

공유하기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놀이공원 이용 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본 적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비 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정보 및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① 노동권 ② 접근권 ③ 자연권 ④ 자기결정권

○ 정답 | ② 접근권

○ 해설 | 접근권은 장애인이 시설물,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등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정보와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다음 중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저상형 버스
② 복지콜 서비스
③ 보이스오버 기능
④ 장애인 주차장

○ 정답 | ③ 보이스오버 기능

○ 해설 | 보이스오버는 소리와 제스처 기반의 화면읽기 기능으로 화면을 볼 수 없어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3. 다음 당황 중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대리인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②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거부해 임대를 하지 않는 임대인
③ 음성 안내 기능이 없는 터치패널이 장착된 가전제품
④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는 홈페이지 동영상

- 정답 | 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대리인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 해설 | 중증 장애인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리하기

1.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① 개념

- 재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형체가 있는 물품
- 용역: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활동이나 작용,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

② 장애인을 위한 재화와 용역

- 저상버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
-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콜택시
- 접근권: 장애인이 시설물,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등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정보 및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2. 재화와 용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상황들

- 부동산거래에 있어 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 문제로 주거공간을 찾기 어려움
- 금융거래 시의 차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을 법적 근거 없음
- 이동교통수단에서의 차별
 - 저상버스 도입률: 36.2%(2015년 10월 기준)
 - 장애인 복지콜 수: 142대(2015년 기준)
 - 지하철 승강장의 발빠짐 사고: 61개역에서 발생(2013~2015)
- 정보접근권에서의 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개시
 -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기능을 제공
- 여가활동에서의 차별: 교통편의, 숙박편의, 관광지 편의, 기타 이동편의 등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 필요

제11강



장애를 이유로 하는 괴롭힘들

1. 장애인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
2.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상황들
3. 공유하기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를 우리는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꼭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차별로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별행위는 결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다른 측면의 장애인차별이 있습니다. 그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고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으며,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장애인을 마치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타인의 차이를 다르다가 아니라 나쁘다’ 라고 보는 사람들의 편견에서 시작하는 무서운 혐오범죄, 이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서 해결할 수도,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 여타의 차별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현재 괴롭힘, 학대 등의 인권침해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학습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체적인 괴롭힘의 사례를 통해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차별로 판단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괴롭힘, 학대 등의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장애인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
-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상황들

1

장애인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

가. 괴롭힘의 개념

1. 괴롭힘의 정의

보통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놀리고 따돌리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괴롭힘 등”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또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명시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일

나.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괴롭힘, 장애인 비하발언

1. ‘애자’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놀리기 위해 장애자를 의미하는 ‘애자’라는 말을 사용 요즘은 단순히 장애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까지를 포함하는 말 실제로 장애가 있거나 성적취향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상대가 마음에 안들고 기분이 나쁘면 사용함

더 심각한 것은 차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혐오대상으로 보고 놀림과 욕설로 그 용어를 사용

2. 인터넷 상에서의 장애인 비하 발언

○ ‘자폐 사진’, ‘저능짤’

이상한 표정이나 포즈가 캡처된 사진을 보면 ‘자폐 사진’, ‘저능짤’이라는 말을 사용
‘이렇게 쉬운 건 장애인도 할 수 있겠다.’는 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아프리카BJ: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그런 장애가 있었으면 난 자살했을 것이다. 장애인 대부분은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 장애인을 사람으로 대접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이상한 애들은 자폐아들인 경우가 많다.

아나운서: 이 정도 한자 문제도 풀지 못하다니 제가 한자 장애인이에요.

30대 중반: 결혼할 때는 집안도 잘 살펴봐야 해. 특히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후손한테 DNA가 이어질 수 있거든.

30대 중반: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짹짹이 눈에 정신지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건 정말 큰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방송 BJ들은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하 발언을 하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3. 속담 속 장애인 비하 발언

꿀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눈 뜬 장님, 장님 문고리 잡기,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소경이 개울 탕 한다, 귀머거리 삼년, 장님 삼년, 병어리 삼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담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회의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와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아직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비하 발언들은 결국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나의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상황들

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아래 사례를 살펴봅시다.

1. 다음 상황은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행동에 해당될까, 아닐까?
2. 이야기 속 괴롭힘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례 1

20여년 간의 착취

철수씨와 영희씨는 경기도 외곽의 한 목장에서 20여년간 임금 한푼받지 않고 목장일을 해왔습니다. 목장 근처에 주인은 번듯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지만, 철수씨와 영희씨는 소들이 있는 축사 바로 옆에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씨는 30대에 처음 주변사람들의 소개로 이 목장에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씨 어머니가 가족도 없이 지내는 영희씨와 결혼을 시키셨고, 그때부터 영희씨도 여기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철수씨와 영희씨는 모두 지적장애인입니다. 주인은 항상 두 사람을 자신이 돌보아 준다고 하지만, 영희씨와 철수씨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농장에서 일하고, 영희씨는 주인집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게 농장에서 멀리 나가본 적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철수씨는 어느덧 6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강도 좋지 않아 점점 아픈 곳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철수씨에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자면서 면사무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면사무소 직원이 철수씨의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시청에 신고해서 철수씨와 영희씨의 삶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 철수씨와 영희씨처럼 인적이 드문 농장이나 외곽에 위치한 공장 등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가 더 어렵다.

이야기 속 철수씨는 다행히 면사무소 직원이 20년간 지역에 살던 분이셨고 그 동안 본 적이 없었던 지적장애인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러 온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시청에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진 경우이다. 이후 두 분은 지자체의 지원 센터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나오시게 되었고, 시에서 주거비용을 지원받아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지원으로 그 동안 밀린 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장애인이니깐 조금 심하게 일을 시켜도 장애인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니깐 괜찮다라는 생각이 문제이다. 비장애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 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괴롭힘

-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아래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 다음 상황은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행동에 해당될까, 아닐까?
 - 이야기 속 괴롭힘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례 1

내레이터: 지적장애3급인 준원이 엄마는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신발을 벗겨보았더니 아이 발바닥에 온통 뾰족한 것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팔다리에 상처를 발견하고 아이를 잘 설득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부터 함께 다녔던 친구가 다른 아이들까지 데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원이: 반 친구들이 학교 뒷마당에서 샤프로 발바닥을 찔렀어요. 친구들이 무서워서 전 가만히 있었어요.

내레이터: 준원이 엄마는 담임선생님과 가해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말을 아주 잘하는 가해아이 말만 듣고 믿을 수 없다며 준원이와 준원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학교 안에서의 차별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인 경우보다 괴롭힘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 통합교육이 확대되면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사와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교사와 학교의 이해도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에게 친구의 장애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어떻게 지내야 할 지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괴롭힘이라는 갈등상황으로 이어진다. 또한, 성적과 사회적 성공 등을 중심으로 계속 무엇인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비장애아동의 경우 그런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자신보다 약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친구에게 쏟아내게 된다. 무엇보다 특수학급이 아닌 통합반의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맡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관계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례 3. 학교에 가기 싫어요.

윤주는 통합학교의 4학년 학생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윤주는 언어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주가 심하게 우울해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윤주: 학교에 가기 싫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 윤주 어머니는 같은 반의 비장애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반아이들이 윤주를 교실 구석에 몰아놓고, 쿡쿡 찌르면서 놀리고 괴롭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선생님이 안 계실 때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담임선생님이 앞에 교탁에 계셨는데도 그 아이들에게 멀리서 '하지마라, 하지마라'고 이야기만 하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의 장애아동을 대하는 자세는 전체 반 아이들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장애학생이 있는 반에서 같은 반 친구 중 한명을 도우미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도우미 활동이 꼭 필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의 교사는 이 도우미 활동을 학급에 벌칙활동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장애학생이나 억지로 지원을 하는 비장애학생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가 학생들의 관계맺기를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학생의 괴롭힘을 막겠다며 아예 비장애학생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모둠 활동을 할 때 장애학생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장애학생이 조금이라도 과잉행동을 보이면 보조선생님에게 빨리 특수반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장애아동의 존재를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직장에서의 장애인 괴롭힘

-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아래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 다음 상황은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행동에 해당될까, 아닐까?

사례 4. 장애인은 왕따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미정씨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업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이전에도 교육청 등에서 근무해본 적이 있는 미정씨는 계약직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면서 미정씨에게 너무나 힘든 직장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은 노골적으로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팀장: 장애가 있어서 그런가..., 왜 이게 안되지? 업무보조를 장애인이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

내레이터: 팀원들끼리 카톡방을 만들면서 미정씨는 그 카톡방에서 제외시키고 사무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일부러 미정씨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미정씨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일과 관련해서 팀회의를 할 때 미정씨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비장애인들끼리만 회의를 한 후 미정씨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알려주지만 했습니다.

사례처럼 왕따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대응하기에도 애매하여 더 문제이다. 그런 이유로 직장 안에서의 괴롭힘 상황은 실제 상담소에 연락이 오는 것보다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의 경우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속담은 무엇인가요?

- ① 눈 뜬 장님
- 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③ 병신자식이 효도한다
- ④ 소경이 개울 닦한다.

○ 정답 | 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해설 | 2번은 말이나 행동에 관한 속담으로 장애인 비하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다음 중 장애인을 괴롭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무임금 노동을 하는 장애인을 돕기위해 장애인차별상담소에 연락을 취한다.
- ② 의식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가져간다.
- ③ 임금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통장, 신분증, 도장 등을 달라고 한다.
- ④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같이 해주고 수급비는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다.

○ 정답 | ① 무임금 노동을 하는 장애인을 돕기위해 장애인차별상담소에 연락을 취한다.

○ 해설 | 비 장애인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었을 일을 무심하게 넘기고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장애인을 지원하기 매우 어렵다. 작은 관심과 지원이 오랜시간 괴롭힘 속에 놓여있던 장애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3. 다음은 통합학교 교사의 학생들간의 관계맺기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요?

- ① 장애학생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무조건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 ② 장애학생이 조금이라도 과잉행동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특수반으로 가도록 조치한다.

- ③ 별 받을 학생이 있을 경우 별 대신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을 하도록 한다.
- ④ 괴롭히는 상황이 생기면 장애학생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도록 한다.

- 정답 | ④ 괴롭히는 상황이 생기면 장애학생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도록 한다.
- 해설 | 교사가 장애아동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전체 반 아이들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배제시키지 않고 존중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리하기

1. 장애인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

- 괴롭힘 등: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행위
- 괴롭힘 등의 금지: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
- 장애인 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

2. 장애인비하발언

- 애자: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게 하는 상대방에 사용하는 놀림과 욕설로 사용됨
- 인터넷 상 비하 발언: 저능짤,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쉬운 건 장애인도 할 수 있겠다.' 등
- 속담 속 비하발언: '꿀 먹은 병어리', '눈 뜬 장님', '소경이 개울 타한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3.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상황들

- **지역사회에서의 괴롭힘**
 - 지역주민으로부터의 금전착취 등 괴롭힘
 - 인적이 드문 농장에서 무임금 노동착취
 - 작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괴롭힘 속에 있는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됨
- **학교 안에서의 괴롭힘**
 - 형식과 절차상 문제보다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상황

- 교사와 학교가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학생들이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갈등상황을 유발
- 교사가 장애아동을 대하는 생각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모방효과

○ **직장에서의 괴롭힘**

- 실제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괴롭힘에 대응을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대응을 꺼림

제12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내외 장애인 관련법 살펴보기

1.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3. 공유하기

제12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내외 장애인 관련법 살펴보기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인구 기구와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관련법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그 중 대표적인 국제규약으로 2006년 12월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이은 7번째 인권규약입니다. 이전의 다양한 국제규약속에서도, 심지어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강력하게 담아낼 수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게 되었고 세계의 많은 국가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재는 각 국가 법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차시에서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 제도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과정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시행중인 법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내외 장애인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법

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즉,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법

다.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법률(주거약자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 2012년 2월 22일 제정

라.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
- 2015년 12월 29일 제정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

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이 지역사회안에서 비장애인과 차별 받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자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인적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 내가 법을 만든다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들고 싶은 법은?

1.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까?

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약속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약속을 위해서는 많은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장애인의 인권을 담지 못한 국제협약들

전쟁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였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얼마나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는지 특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얼마나 가중된 고통을 겪으며 인권을 잃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을 만들었다.

☞ 개념보충: 세계인권선언(1948)

-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수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음
- 세계인권선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구체적인 인권을 규정한 협약들을 만들
-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세계 최초로 선포한 국제적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 및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선언문 안에 담지 못함

나. 세계인의 약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정

- 2001년 56차 유엔총회, 멕시코의 빈센트 파스 대통령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 200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립이 결정
- 2002년 8월을 시작으로 8차례 특별위원회가 개최
 - 협약의 형태, 성격, 구조, 비차별 및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등 협약의 주요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토의
 - 각 조항 별로 각국정부대표, 국가인권기구, 국제장애인연맹, 장애시민단체 등 입장과 견해를 모아서 조문을 발표,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
- 2006년 8월 제 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이 완성되었음
- 2006년 12월 13일 제 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

2. 장애인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이야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목적
 -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
 -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협약
 - 협약은 협약에 나오는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 편의, 보편적 설계가 무슨 뜻인지 설명함
 - 의사소통은 정보통신 기술, 서면 음성, 대중매체를 포함한 영역
 - 언어는 구어, 수어, 비음성 언어를 포함
 -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 편의, 보편적 설계를 정의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일반원칙

-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차별 금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등을 제시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역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먼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과 협약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에 위배될 경우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협약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예) 2016년 2월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언어를 구어와 수화언어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규정. 즉, 수화언어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법으로 인정

다.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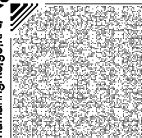
①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②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찾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황에 대한 인지와 판단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대상이 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장애유형에 맞게 특화하여 보장할 필요성을 느껴 제정된 법

- ③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 것을 요구하는 법
- ④ 주거의 권리를 찾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장애나 연령으로 인해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편리하게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⑤ 보조기기를 내 몸의 일부라 생각하여 잘 지원받고 활용하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등에게 보조기기는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여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장애인은 이 보조기기를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 ⑥ 모든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 이외에도 각종 정보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편의를 규정하고 있음
- ⑦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함. 국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공유하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② 우리나라는 2009년 국회에서 총 50개조항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비준하였다.
- ③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한국수화언어법은 협약에서 규정한 언어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만들었다.

○ 정답 | ② 우리나라는 2009년 국회에서 총 50개조항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비준하였다.

○ 해설 | 우리나라는 개인진정제도를 담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2. 다음 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언어는 비음성언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일반원칙의 내용 중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 ③ 제15조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 ④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 정답 | ① 언어는 비음성언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 해설 | 제2조 정의에서 언어는 구어, 수화, 비음성언어 모두 포함합니다. ②제3조 일반원칙의 내용 중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국내법과 그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발달장애인법-전담경찰, 전담검사 지정
-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③ 장애인등편의증진법-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 ④ 장애인등보조기기법-보조기기를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제공받고,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

- 정답 | ③ 장애인등편의증진법-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 해설 | ③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편의 시설을 통한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정리하기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과정

- 2001년 56차 유엔총회 멕시코 빈센트팍스 대통령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 2001년 12월 유엔총회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결정
- 2002년 8월부터 8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
: 협약의 형태, 성격, 구조, 비차별 및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등 협약의 주요한 쟁점에 대해 집중토의
- 각 조항별로 각국정부대표, 국가인권기구, 국제장애인연맹, 장애시민단체 등 입장과 견해를 모아서 조문을 발표하고,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
- 2006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을 완성
-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역할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협약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 2016년 2월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언어를 구어와 수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시행 중인 법제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강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법
3. 공유하기

제13강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001년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에 대한 준사법기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명시하여,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기구이며 장애인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그에 따른 권리옹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습목표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조사와 구제조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장애인 권리옹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법

가. 개념

1. 파리원칙

- 1993년 12월 유엔총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담아 채택한 원칙
-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이나 법령에 근거를 두며, 명확하고 광범위한 업무, 정부로부터의 독립,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 구성, 적정한 조사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근간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

1. 진정접수

1) 진정

- 진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나 인권위 같은 공적 기관에 자세하게 진술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
-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음

2. 조사

1) 직권조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
- 피해자의 진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라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행위
- 직권조사는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진정이 없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니 직접 진정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2) 조정

- 직권조사 과정에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를 통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하여 진정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음
- 만약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통지된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3) 긴급구제조치

- 진정이나 직권조사를 거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
- 피해자가 계속해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개연성이 확인되고 그냥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하게 차별행위의 중지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

3. 위원회 의결

1) 시정권고

- 진정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 기각, 각하, 조정 등을 결정
- 구제조치는 시정권고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차별상황을 해결하여 진정인의 피해 상황을 구제하라고 권고를 하는 일
-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국가기관의 차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재판과 같은 차별대응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2) 기각

- 진정인의 청구 내용이 이유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물리치는 것
- 청구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재진정을 할 수 없음

- 사건이 기각되면 위원회는 진정인에게 결과와 이유를 통보함
- 기각 사유
 - 조사를 했는데 차별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각으로 처리
 - 피해가 있었다고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경우에도 기각으로 처리
 -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피진정인이 차별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제출했을 때
 - 조사관은 차별피해의 회복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기각처리 의견으로 조사결과를 소위원회에 심의 요청.

3) 각하

- 진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청구 자체를 물리치는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에 명시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로 처리되는 경우
 - 사건이 장애를 인한 차별사건이 아니거나 진정인이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 진정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하시키거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조사를 중단
 -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이미 기각 처리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재진정한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진정의 취지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개념보충: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 **전원위원회**: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으로 총 11명으로 구성
인권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이 선출지명,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 상임위원

-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2명을 선출
- 국가공무원 차관급으로 인권위 상근, 각종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비상임위원

- 대통령이 2명 지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2명을 선출
- 명예직으로 인권위 비상근이나 각종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 가짐

다. 장애인 진정접수방법

1. 장애인 진정 접수처, 장애차별조사과

○ 장애차별조사 1과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 관련시설 사항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차별관련 업무를 수행

시설과 관련이 없는 장애인차별사건들은 모두 이곳으로 배정됩니다.

○ 장애차별조사 2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진행

2. 진정접수 방법

1) 진정서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진정민원신청 코너에 직접 작성

○ 꼭 정해진 양식에 쓰지 않고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록해서 제출해도 무방

- 진정하고 싶은 내용을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의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작성
-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접수
 - 국번 없이 1331 로 전화, 상담원과 통화해서 나의 사정을 이야기
 - 내용을 모두 전달 후 진정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접수
 - 이 밖에도 이메일, 모바일웹 등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진정의사를 인권위 쪽에 전달하면 진정이 접수됨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법

가. 다음 상황은 진정할 수 있는 사건일까?

지체장애: 저는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람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땅을 지금 사놓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하여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땅은 개발예정도 없고 그냥 산자락에 쓸모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20대남성: 성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와 저는 다세대가 여러 채 있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집 부부가 제가 회사에 간 사이 청각장애인인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 여자: 길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안치구고 뭐하는 거야? 당신이 쓰레기 정리를 제대로 안하니깐 골목이 전부 더러워 졌잖아. 얼른 치워!

장애인: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며칠 전 도로가의 인도를 지나가다가 보도블럭이 깨져서 깊게 패인 길 때문에 휠체어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막 4개월정도가 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컴퓨터 등을 준비해주지 않아서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매일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는 모두 인권위 진정이 가능하다. 사례 속 첫 번째 경우에는 꼭 장애 때문에 금전적인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이 아닌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고소고발 해야 한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개인간에 일어난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 경우에는 패인 도로는 비장애인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가 지자체의 소유일 경우 해당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진정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우리동네 세무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는 휠체어 장애인입니다. 지난 주에 제가 사는 곳의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세무서는 3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업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무서 측에 이야기했더니, 이 건물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시의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서,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세무관련 업무를 보는데 꼭 방문하셔야 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야기 속 장애인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진정사건에 조사관이 배정되고 진정인에게 조사관 배정을 문자로 알려준다. 이 사건의 경우 장애차별조사¹과로 배정된다.

이후 조사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그리고 세무서 쪽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인권위 조사관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세무서 측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세무서가 진정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임대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단독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고 현재 신축중이라는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했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1층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공간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제시한 방안대로 처리했는지 조사관이 직접 확인하는데, 세무서를 직접 가서

신축상황이나 1층 임시공간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이 때 조사관은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등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함께 제출한다. 만약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완료되면 최종 결정사항을 진정인에게 사건 처리결과통지서로 통보한다.

이 사례에서 세무서는 공공기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세무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세무서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매우 노후하여 편의 증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며, 이에 건물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게다가 세무서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건물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무서가 현재 단독건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사를 건축 중이며, 임시적으로 1층에 민원처리공간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처리한 경우이다.

3 공유하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적어보세요.



문제풀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하세요.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 기각처리 사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 ② 조사결과 차별행위가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③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④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는 경우

○ 정답 |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시 기각처리 사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가 해당된다.

2.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장애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 →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 ② 도로가 파여서 장애인이 상처를 입은 경우 → 해당 관청에 민원제기
- ③ 장애인이라고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④ 장애인 업무편의를 위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

○ 정답 | ④ 장애인 업무편의를 위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

○ 해설 | 장애인 업무 편의를 위한 기구는 장애인 고용기관에서 제공해야하며, 더불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관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인권위에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상황을 구제하라고 권고했다면 꼭 시행해야 한다.
- ② 진정사건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된다.
- ③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진정서를 쓰기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 정답 | ① 인권위에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상황을 구제하라고 권고했다면 꼭 시행해야 한다.

○ 해설 | 인권위에서 피해상황을 주재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어서 피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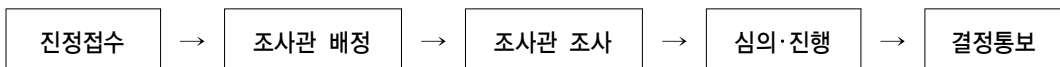
정리하기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담아 채택한 원칙
- 진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적인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고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조사: 조정위원회를 통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하여 진정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 직권조사: 피해자의 진정이 없었지만,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직접 조사하는 것
- 긴급구제조치: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청인이나 그 소속기관장에게 긴급하게 차별행위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
- 기각: 진정인의 청구 내용을 이유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
- 각하: 진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청구 자체를 물리치는 것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법

-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모두 진정 가능
- 진정사건 처리과정
 - 진정 접수: 접수증 발급
 - 조사관 배정: 진정인에게 배정 통보
 - 조사관 조사: 자세한 상황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확인
 - 심의, 진행: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 결정 통보: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통해 진정인에게 통보



제14강



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1.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 및 제도
2.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한 상황들
3. 공유하기

제14강

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1955년 로자 파크스 라는 평범한 흑인 여성은 “왜 똑같은 요금을 냈는데 흑인은 앞에 앉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가던 그녀는 결국 흑백 인종분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의 용감한 행동을 시작으로 평범한 흑인 시민들이 버스에서의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381일간 버스를 타지 않았고, 그들의 평화롭지만 강력한 차별에 대한 메시지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에서의 인종 분리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흑인들이 버스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면, 흑백인종분리법은 오늘날까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차별에 대응하여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찾고 해결해나가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나 이후에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흑인이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장애인에게 차별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활 구석 구석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차별에 대응하고 나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권리옹호 방법을 알고 차별상황에 맞는 적절한 권리옹호 활동을 통해 더 이상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권리 옹호 방법 이외에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다양한 권리옹호 방법들을 찾아보고 사례를 통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 형사사법절차 등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권리옹호 방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 및 제도
-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한 상황들

가.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

1. 국가권익위원회의 역할

1) 국가권익위원회

-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 및 구제 하기 위한 기구
-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에 만든 기구

2) 국가권익위원회의 역할

- 행정제도 개선 및 고충민원 처리
-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
- 행정심판 등을 통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 권리옹호를 위한 의사소통조력인 요청(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
 -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형사사법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게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내용을 잘 설명받고, 나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 의사소통을 조력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해야함

3.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것

-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조력인 요청

- 장애유형에 맞게 조사 및 재판과정의 내용 설명
 -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한 조력
 - 발달장애인의 경우
 - ☞ 질문을 쉽게 설명해주고 당사자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조사과정에서 억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지원해줄 조력인 필요
 - 청각장애인의 경우
 - ☞ 청각장애인이란 수화통역사가 필요
 - 시각장애인의 경우
 - ☞ 시각 장애인이면 진술조서 등 서류가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원 필요
 - 언어장애인의 경우
 - ☞ 당사자의 진술을 조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원
- 장애유형에 맞는 서식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 장애유형에 맞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
 - 기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 및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장애인이 피의자(가해자)인 경우에도 정당한 편의지원 요청
-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가해자, 즉 피의자인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이나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나.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

1. 고소

-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나 법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할 권리를 갖고 있는 고소권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 고소의 경우에는 고소 취소를 한다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다

2. 고발

-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알려 사법기관의 심판을 요청하는 행위
-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데 고발은 제3자가 요청 가능
예) 구청공무원이 지적장애인의 수급비를 이웃의 비장애인이 갈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것을 경찰에 고발해야 함
공무원이나 유치원교사 등 일부직종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이며 이에 따라 관련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의무가 있음

3. 진정

- 제3자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서 조사를 요청하는 행위
- 진정은 근거가 없더라도 의심이 들면 조사해달라고 할 수 있음
- 누군가로부터 진정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입건해서 사건수사를 진행하게 됨

4. 1인 시위

-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집회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법의 규제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 한 사람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홀로 하는 시위방식

- 혼자 진행함에 따라 집회와 시위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음

2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한 상황들

가. 이웃사람이 돈을 뺏어갔어요.

사례 1

40대 남자: 이웃사람이 돈을 뺏어갔어요.

40대 여자: 길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안치구고 뭐하는 거야? 당신이 쓰레기 정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골목이 전부 더러워 졌잖아. 얼른 치워!

지적장애인 이씨는 80대의 노모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일을 해서 버는 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집사부부가 어느 날 이씨 집에 찾아 왔습니다.

집사아내: 저희에게 돈을 맡기면 잘 맡아서 불러 드릴게요. 돈을 잘 모아놔야 나중에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리면 장가도 가고 하지요.

이씨와 이씨의 어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인지라 믿고 이모씨와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모두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집사부부는 이씨가 젊은 시절 큰아버지의 농장일을 도와주고, 독립할 때 받았던 3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자신들 마음대로 찾아서 사용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면 그 다음날 바로 이씨의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찾게 해서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또한 이씨가 돈을 벌면 모두 자신들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돈에서 3만원 5만원 오히려 이씨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인데도 집사부부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이씨의 경우에도 아파트 부녀회장이 이들의 관계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씨와 어머니를 설득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부녀회장은 이들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1331 상담전화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로 소개해 주었고 이곳의 지원을 받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웃주민인 부녀회장이 지적장애인인 당사자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관심과 도움을 주어서 이씨는 3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집사부부의 금전적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집사부부는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서 사기사건으로는 드물게 실형을 받았다.

나. 장애등급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사례 2

20대 남자: 장애등급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내레이터: 김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김군은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막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일자리도 신청하고, 임대아파트도 신청하기 위해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 심사센터에서 김군이 시설에서 학교에 다닐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냥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 정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장애외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군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에 자폐성장애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등급심사센터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등급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자폐성 장애인으로 판단되는데 등급심사센터의 장애외등급 결정으로 인해 김군은 신청했던 장애인복지일자리도 영구임대아파트도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김군의 경우 자주 방문하던 센터에서 여러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 행정심판 청구를 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듣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등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김군처럼 행정청, 즉 국가기관의 결정과 판단이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념보충: 행정심판청구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는 것
-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 행정청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다.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했습니다.

 사례 3

30대 남자: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했습니다.

내레이터: 장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포장상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씨가 일하고 있는 공장은 50명이 넘는 지적장애인들이 일하고 있고, 공장 입구에 ‘우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명패도 크게 붙어있습니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지정해서 세금이나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장을 비롯해 비장애인 직원들이 많은 수의 장애인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괴롭히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씨는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도움을 받아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장씨가 진정한 것을 알게 된 회사에서는 몇 달 전 다른 직원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꼬투리잡아서 자기를 마음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씨를 징계하고 했습니다.

사례 3)의 경우, 장씨는 먼저 장애인차별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곳의 도움을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서 사측이 합의를 요청했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추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 개념보충: 노동위원회

- 노사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준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 노동과 관련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간에 화해를 권고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음

라. 월급이 밀렸는데 주질 않습니다.

 사례 4

20대 여자: 월급이 밀렸는데 주질 않습니다.

내레이터: 신발에 장식품을 붙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혜순씨, 정순씨, 윤미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세 사람은 2년전 이곳 공장에서 청각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란에 올려놓은 공고를 보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되지 않지만,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개월정도 월급을 주지 않고 있어서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사를 요청하여 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통역사: 밀린 월급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장이 수화로 이야기 못하게 해서 의사소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과장: 싫으면 관두세요. 지금 관두고 나가면 되잖아요.

내레이터: 통역을 하러 온 수화통역사도 혜순씨, 정순씨, 윤미씨도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내레이터: 그리고 며칠 후 수화통역사 없이 세 사람이 함께 다시 사장을 찾아가서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종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들을 일시켜줬더니 돈만 달라고 한다면서 말도 못하는 병어리들이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들을 종이에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례 4)의 경우, 혜순씨를 비롯한 청각장애인들 역시 장애인차별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상담소의 변호사와 의논해서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결국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개념보충: 노동청과 근로감독관

-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 노동행정 기관
- 서울 전역에 6개의 지청을 두고 고용차별 등 고용환경에 대한 업무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의 위반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

-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의 기준에 위반되는 사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공무원
- 서류제출의 요구, 심문, 검진 등의 권한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함
-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수 있음

마.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사례 5

40대 여자: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진수군은 특수학교 고등부에 다니는 발달장애 1급 학생입니다. 그런데 2박3일간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진수군의 손톱과 발톱이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뜯겨져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위에는 임시로 붙인 붕대와 반창고가 상처의 피와 엉겨 붙어 떼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수군의 어머니는 급히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40대 여자: 진수 손톱, 발톱이 다 뜯겨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30대 여자: 같은 반 발달장애 아이가 밤에 잘 때 물어 뜯은 것 같아요.

물론 진수어머니는 같은 발달장애 아동끼리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해하게 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용한 밤에 양손과 발이 뜯길 때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냈을 텐데 왜 동행했던 교사와 사회복지요원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세수와 양치 등을 시켰다면, 손·발이 모두 상처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담임교사는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그 아픈 손과 발을 가지고, 많이 걸어 다녀야 하는 수학여행의 남은 일정을 모두 끝내야만 했습니다.

사례 5)의 경우, 진수 어머니는 보상을 바라기 보다는 그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동행했던 교사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정도를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계속 정확한 상황설명을 회피하고, 책임을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위해 상담소로 연락을 했다. 이후 상담소는 같은 학교 어머니들과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청

앞에서 진행했다. 어머니들은 기자회견 이후 교육청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기자회견 진행을 보면서 교육청과 학교 측, 그리고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처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 자원을 찾아서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같은 학교 어머니들을 모아서 힘을 가지고 함께 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3 공유하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문제풀기

1. 다음 권익옹호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고소: 고소를 취소한 경우 같은 사건을 재고소 할 수 없음
- ② 고발: 피해당사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심판을 요청함
- ③ 진정: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정황상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요청함
- ④ 1인 시위: 홀로 하는 시위방식으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정답 | ② 고발: 피해당사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심판을 요청함

○ 해설 |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지만 고발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인지한 경우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2. 일터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노동위원회: 노사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
- ② 노동청: 고용차별 등 고용환경에 대한 업무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의 위반사건 처리 담당
- ③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공무원으로 범죄에 대한 심문, 검진 등이 불가능
- ④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가능

○ 정답 | ③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공무원으로 범죄에 대한 심문, 검진 등이 불가능

○ 해설 |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지만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심문, 검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다음 중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행정기관이 권리 침해한 경우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권리구제가 어렵다.
- ② 권리 침해를 당하면 관련기관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다.
- ③ 기자회견을 하면 여론과 관심을 통해 가해기관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1인 시위는 보통 권리를 침해한 기관 앞에서 주로 진행한다.

○ 정답 | ① 행정기관이 권리 침해를 한 경우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권리구제가 어렵다.

○ 해설 | 행정기관이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다.



정리하기

1.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 및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
- 의사소통조력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원 재판까지 절차상 의사소통을 조력하며 지원하는 사람
- 고소: 사건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 고발: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알려 사법기관의 심판을 요청하는 행위
- 진정: 제3자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서 조사를 요청하는 행위
- 1인 시위: 법의 규제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홀로 하는 시위방식

2. 권리옹호를 위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한 상황들

-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함
- 노동위원회: 노사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준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 노동과 관련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당사자 간에 화해를 권고함
- 노동청: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 노동행정 기관으로 서울 전역에 6개의 지청을 두고 고용차별 등 고용환경에 대한 업무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의 위반사건의 처리 담당

- 근로감독관: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의 기준에 위반되는 사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공무원
 -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문, 검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발조치 가능

제15강



장애인 차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장애인 차별이란?
2. 우리 사회 속 장애인의 모습
3.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자세
5. 공유하기

제15강 장애인 차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이전 14차시까지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이 어떤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회 구석구석 담겨있는 차별사례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 많은 차별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혹시 장애를 몰랐기 때문에 또는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크고 작은 차별의 가해자가 된 적은 없으셨나요?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함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모른 척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나의 모습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장애인 차별이란?
- 우리 사회 속 장애인의 모습
-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자세

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들

-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예) 장애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
- 선입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 속에 굳어진 견해
예)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백화점서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 동정: 장애인을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생각
- 시혜: 은혜를 베푸는 것
-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님
- 비하: 장애인을 업신여겨서 낮추는 것
- 혐오: 특정대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나.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 ‘장애인은 어떠할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생각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쌍하다’, ‘꼭 보호 받아야 한다’
-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장애인의 삶과 모습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함부로 단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세상에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 장애에 대한 나의 생각들 속에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2 우리 사회 속 장애인의 모습

사례 1. A 아나운서의 ‘한자 장애인’ 발언 논란

지상파의 퀴즈 프로그램에서 B개그맨이 최후의 1인에 도전하여 100명의 참가자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출제된 문제 중에는 이유식에서 ‘유’의 한문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B개그맨은 ‘젓 유(乳)’를 선택해 정답을 맞췄습니다.

MC는 100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신입A아나운서가 탈락하자,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A아나운서는 “이유식이 아이들이 먹기에 부드러운 음식이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의심이 여지없이 ‘부드러운 유(柔)’를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역시 (나는) 한자 장애인이었다”며 탈락을 아쉬워했습니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A 아나운서의 ‘한자 장애인’이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 충격이며, 불쾌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올바른 말을 전달해야 하는 아나운서가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경솔하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저 옷 입으면 장애인…” 인터넷방송 비하 발언 다시 ‘슬며시’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이 논란이 돼 A(이니셜) TV가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인기 BJ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방송의 한 게임 프로그램. 방송도중 한 BJ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BJ: “저런 몸매 좋으신 분들이 (코스프레)하니까 그렇지, 제가 하면 무슨 장애인이다 욕해요.”

기자: 애청자가 20만 명이 넘는 유명한 BJ도 게임 도중 실수를 한 상대방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J: “장애인이세요? 틱(장애) 있으세요?”

기자: 지난해 말, 장애인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달 유명 BJ 6명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로부터 ‘이용중지’ 처분을 받았고, 인터넷 방송사도 이에 대해 BJ 교육이 미비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BJ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방송사는 문제를 일으킨 BJ 한 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BJ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 혐오하는 발언들은 아직도 장애인을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 3. 장애인이 뭘 위험하게 놀이기구까지 타려고...!

2016년 4월 25일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검증은 2015년 시각장애인의 7개 놀이기구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는 A놀이공원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 대한 재판과정이었습니니다. A놀이공원은 놀이기구 비상상황 발생시 시각장애인의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실제로 시각장애인과 재판부가 함께 놀이기구를 탑승해서 비상탈출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현장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장애인들의 소송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은 어쩔 수 없어서...’, 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비장애인은 막으면 안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이니까 못 타게 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너희는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이다.

3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가. 차이: 서로 갖고 있는 다른 점

예) 키 차이 -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몸무게 차이 - 몸무게 40kg과 80kg

피부색 차이 - 흑인과 백인

나이 차이 -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나. 차별: 차이를 이유로 다르게 대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무시하고, 다른 시선을 보내고 하면서 무언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예) 마른 사람은 예민하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를 것

흑인이 더럽고 범죄자가 많은 것이라는 시선을 가진 경찰의이 흑인 과잉 대응 채용 시에 나이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나이 어린 사람을 무시하는 것

‘여자랑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첫딸은 살림밑천’ ‘집안살림과 육아는 여자의 일’

‘여성의 의견은 필요 없어, 남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첫딸이니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지’ 등의 여성 차별

다. 장애인 차별

○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적인 태도

예)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 할 것이고, 무조건 보호가 필요하다”

○ 무조건적으로 장애인을 거부하는 태도

예) ‘우리회사는 장애인은 안 뽑아요’

○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

○ 인권의 가장 큰 원칙은 누구도 어떤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는 것

○ 차별은 꼭 장애인이라서, 흑인이라서, 성 소수자라서 받는 것이 아니다.

- 차별은 장애인만, 여성만, 흑인만 이렇게 누군가의 특정한 유형의 차별만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음

○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받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어떠한 차이에 대해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가지고 다른 대우를 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냥 다른 것
 -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함.

나. 평등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맞추어 주는 점을 기억하기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은 조건이 제공된다면,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항상 차별 받게 된다.
- 평등은 누구도 차별 받지 않도록 각자의 차이에 맞게 조건을 맞추어 주는 것임
-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나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에 따라 각자의 조건을 맞추어서 평등하게 하기 위한 것

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 동정은 차별이다.
 - 상대방을 나와 같은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낮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
- ‘어차피 도와주는 건데 그냥 내가 해주면 장애인이 무조건 받아줘야지’
 - 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생각은 아님.
- 선한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우선 장애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요
- 내가 도움이 라고 생각하면서 비장애인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예)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증장애인이 너무 안쓰러워 보인다고 해도 대신 밥값을 내주는 행위
-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관계가 아닌 동등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평등한 관계

5 공유하기

장애인을 차별했던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적어 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중 차별을 담고 있지 **않은** 말은 무엇인가요?

- ① 선입견
- ② 동정
- ③ 배려
- ④ 혐오

○ 정답 | ③ 배려

○ 해설 | 배려는 서로의 차이를 고려하여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 지하철에서 노인, 임산부,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 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2. 다음 중 차이와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사람은 누구나 차이를 갖고 있다.
- ② 차이를 가지고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 ③ 차별은 흑인이나 장애인처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만 겪는 일이다.
- ④ 나이 어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나이차이에 따른 차별이다.

○ 정답 | ③ 차별은 흑인이나 장애인처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만 겪는 일이다.

○ 해설 | 차별은 사회적 환경과 관계 그리고 나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3. 다음 중 장애인차별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
- ②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주인이 장애인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③ 평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 ④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이다.

- 정답 | ③ 평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 해설 | 평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 여우에게는 접시에, 두루미에게는 호리병에 밥을 주는 것)



정리하기

1. 장애인 차별이란?

- 편견, 선입견, 동정, 시혜, 비하, 혐오

2. 우리 사회 속 장애인의 모습

1) 장애인에 대해 비하와 혐오발언

- 언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수단
-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장애인을 빗대어 이야기함
(예: 한자를 잘 못하는 사람-한자장애인, 게임방송에서 실수한 사람-장애인이예요?)

2)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

-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은 어쩔 수 없어서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 적용을 당연하게 여김

3.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사람은 누구도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차별-차이를 가지고 다른 대우를 하는 것(차이-다른점)
- 사회적인 환경과 관계 그리고 나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누구든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방법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자세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을 받아들이기
- 평등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맞추어 주는 것
- 동정은 차별
-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평등한 관계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장애인 차별 예방〉

| 인 쇄 | 2018년 3월

| 발 행 | 2018년 3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51 | F A X | (02) 2125-09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14-2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정책교육국 인권기획과
TEL.02-2125-9851 FAX.02-2125-0918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614-2 93330